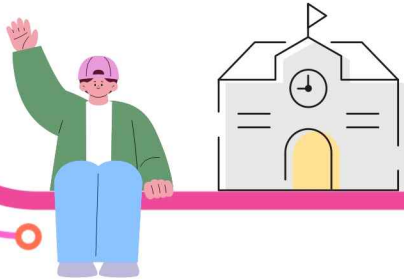


부산교육2026-51

2026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 목 차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I. 사안 처리 개요	1
1. 학교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3
2.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4
3. 신고인·피신고인 유형별 사안 처리 절차	5
가. 학생(신고인)-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5
나. 교직원(신고인)-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6
다. 교원(신고인)-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7
라. 직원(신고인)-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8
II.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9
1. 접수단계 [학교]	11
2. 조사단계 [교육(지원)청]	20
3. 심의단계 [교육청]	26
4. 종결단계 [학교]	31
III. 학교 내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35
IV. 부록	103
1.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기관	105
2. 성희롱·성폭력 구제 외부기관 안내 및 절차	106
3.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관리 및 징계 규정	111



## 용어 정리

- 본 가이드북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안 접수부터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절차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피해자 보호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인(피해자)’ 용어를 혼용하여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행위자’로 정의하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신고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북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성사안’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의미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항

다만, 공식적인 문서 발송 시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면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를 ‘성고충상담일지’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을 ‘성고충처리대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북의 사안 처리 절차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학생 간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준용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의 경우,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따르더라도,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형사 절차와의 연계는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

# I

## 사안 처리 개요

1. 학교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2.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3. 신고인·피신고인 유형별 사안 처리 절차
  - 가. 학생(신고인)-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 나. 교직원(신고인)-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 다. 교원(신고인)-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 라. 직원(신고인)-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 1 학교 내 성사안 처리 흐름도 (세부 내용 p.5 ~ 8 참고)

신고인(피해자) \ 피신고인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심의위원회 (학생 보호-선택)	학폭심의위원회 (학생 보호-선택)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 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원 심의)

신고인(피해자) \ 피신고인	학생	교원	직원
교직원	(교원)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생[신고인(피해자)]-교직원(피신고인)

## 교직원[신고인(피해자)]-교직원(피신고인)

## 교원[신고인(피해자)]-학생(피신고인)

## 직원[신고인(피해자)]-학생(피신고인)

**학교**

- 사안 인지 및 접수 - 서식 [1-1], [1-2]  
학교장 보고 및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필요시 [1-2] 상담일지 작성)
- 조사 및 심의 의뢰(공문 발송) - 서식 [1-3], [1-3-1]
- 신고 및 통보 - 서식 [1-4], [1-4-1], [1-5]  
성범죄 수사기관 즉시 신고 및 성평등가족부 통보
- 긴급보호조치 - 서식 [6-1], [6-2]  
①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분리조치 필수  
② 필요시 피해자 지원(의료비, 전문기관 등)

**학교**

- 사안 인지 및 접수 - 서식 [1-1], [1-2]  
학교장 보고 및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필요시 [1-2] 상담일지 작성)
- 조사 및 심의 의뢰(공문 발송) - 서식 [1-3], [1-3-1]
- 신고 및 통보 - 서식 [1-4], [1-4-1], [1-5]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및 성평등가족부 통보 가능
- 긴급보호조치 - 서식 [6-1], [6-2]  
①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분리조치 필수  
② 필요시 피해자 지원(의료비, 전문기관 등)

**학교**

- 사안 인지 및 접수 - 서식 [1-1], [1-2]  
학교장 보고 및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필요시 [1-2] 상담일지 작성)  
※ 교권보호위원회 우선 개최, 교육활동침해 미인정 시 신고인(피해자) 희망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조사 및 심의 의뢰(공문 발송) - 서식 [1-3], [1-3-1]
- 신고 및 통보 - 서식 [1-4], [1-4-1], [1-5]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및 성평등가족부 통보 가능
- 긴급보호조치 - 서식 [6-1], [6-2]  
①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분리조치 필수  
② 필요시 피해자 지원(의료비, 전문기관 등)

**학교**

- 사안 인지 및 접수 - 서식 [1-1], [1-2]  
학교장 보고 및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필요시 [1-2] 상담일지 작성)
- 조사 및 심의 의뢰(공문 발송) - 서식 [1-3], [1-3-1], [1-6]  
사실 확인 및 관련 학생 조사 (학생생활교육담당자 - 서식 [1-6])
- 신고 및 통보 - 서식 [1-4], [1-4-1], [1-5]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및 성평등가족부 통보 가능
- 긴급보호조치 - 서식 [6-1], [6-2]  
①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분리조치 필수  
② 필요시 피해자 지원(의료비, 전문기관 등)

**교육(지원)청**

- 전수조사 등 사안 조사  
사안 접수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고·특) 시교육청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

- 전수조사 등 사안 조사  
사안 접수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고·특) 시교육청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

- 전수조사 등 사안 조사  
사안 접수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고·특) 시교육청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

- 전수조사 등 사안 조사  
사안 접수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고·특) 시교육청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

**학교**

- 재발방지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행위자 교육 신청 - 서식 [4-2], [4-3]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서식 [4-1], [4-1-1] (사안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교**

- 재발방지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행위자 교육 신청 - 서식 [4-2], [4-3]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서식 [4-1], [4-1-1] (사안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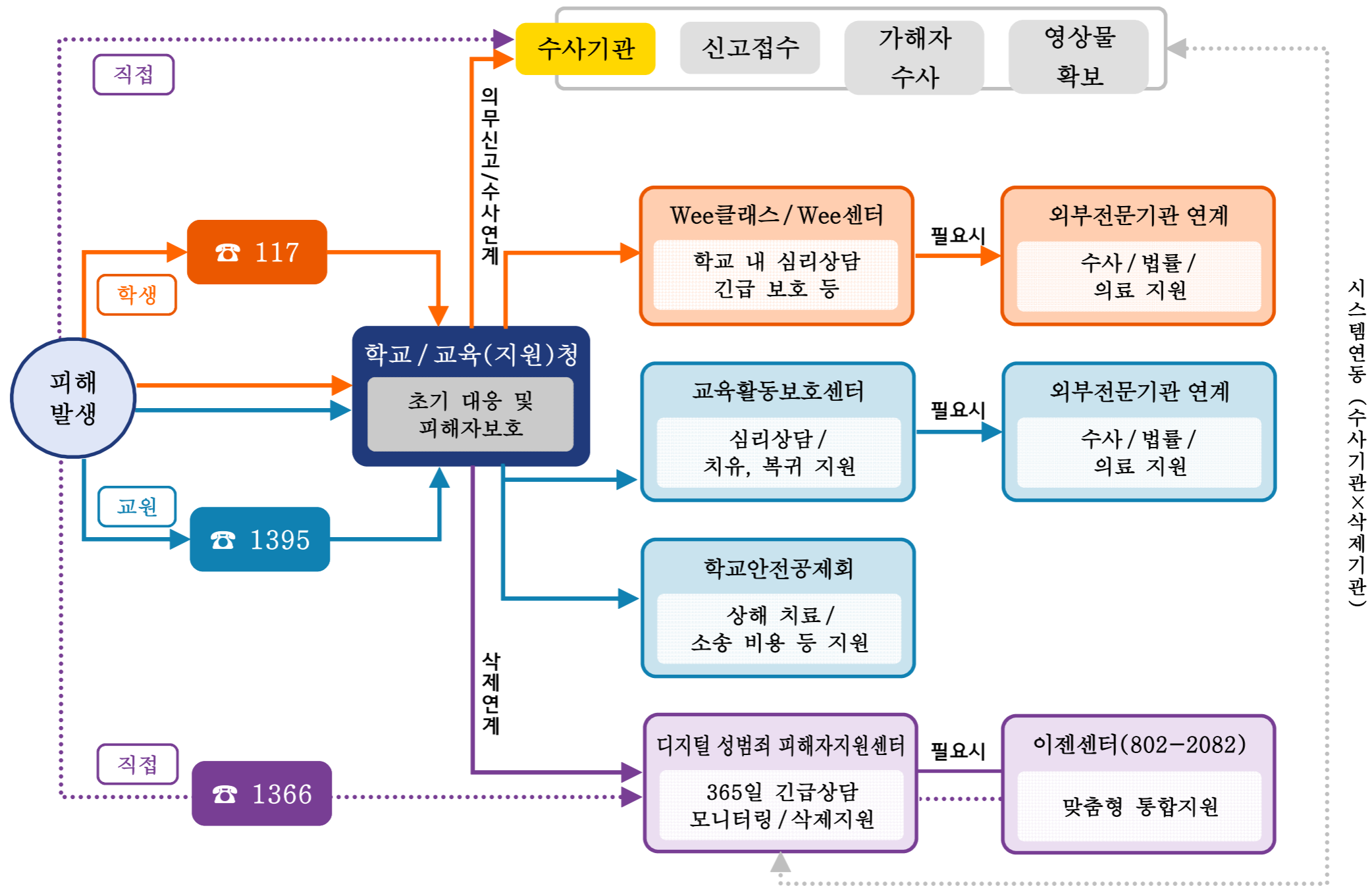
**학교**

- 선도위원회 개최,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
- 재발방지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행위자 교육 신청 - 서식 [4-2], [4-4]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서식 [4-1], [4-1-1] (사안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교**

- 선도위원회 개최,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
- 재발방지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행위자 교육 신청 - 서식 [4-2], [4-4]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서식 [4-1], [4-1-1] (사안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참고 삭제·모니터링 지원기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66, 02-735-8994  
 URL | d4u.stop.or.kr  
 운영 | 365일 24시간 무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화 | 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377  
 URL | www.kocsc.or.kr  
 운영 |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

### 증거 확보

- 최대한 원본 확보 (불가능한 경우, 다운로드 또는 화면 캡처)
-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 저장
-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 유포 화면이나 사이트·링크 저장 및 참여자 명단 캡처

### 신고·고소

- 학교에서 신고한 경우, 신고인(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타 기관 수사 의뢰로 조사착수 가능 (고소인의 경우, 사건 재수사 요청 및 항고 가능)

### 3 신고인·피신고인 유형별 사안 처리 절차

#### 가. 학생[신고인(피해자)]-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접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안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1]</li>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작성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2]</li> <li>- 학교장 보고</li> <li>- 사실 확인 및 통보: 관리자(피신고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신고인(피해자)]</li> </ul> </li> <li>2. 조사 및 심의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사안 접수 보고서(학생용) 작성 및 심의 의뢰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3], [1-3-1]</li> </ul> </li> <li>3. 신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 신고(48시간 이내, 전화 또는 공문 신고)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4], [1-4-1]</li> <li>- 성평등가족부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5]</li> </ul> </li> </ol>
↓		
긴급 보호 조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분리(15쪽 참고)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3-2], [1-3-3]</li> </ul> </li> <li>2. 요청 시 신고인(피해자) 전문기관 지원 연계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6-1], [6-2]</li> </ol>
↓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접수</li> <li>2. 사실 확인(조사) <span style="color: green;">권고</span> [2-1], [2-2], [2-2-1]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 조사: 학교(희망 시 교육청 조사위원 지원 가능)</li> <li>-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 교육청 전담 조사위원이 실시</li> <li>- 전수조사: 학교 협조</li> </ul> </li> <li>3.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2-10], [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접수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li> </ol>
↓		
심의 및 결과 통보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 계획 수립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li> <li>- 당사자 및 심의위원 참석 안내, 제척·회피·기피 확인</li> </ul> </li> <li>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6], [3-6-1]~[3-6-3]</li> <li>3.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사립: 법인)]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7]~[3-8-2]</li> <li>4.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감사 요청(감사부서)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9], [3-9-1]</li> </ol>
↓		
재발 방지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4-2]</li> <li>- (교직원)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4-3]</li> <li>- 교육 결과 보고서 활용 모니터링 적용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7-1]</li> </ul> </li> <li>2.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서 제출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4-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교육청·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로 제출</li> </ul> </li> </ol>

## 나. 교직원[신고인(피해자)]-교직원(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접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안 인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1]</li>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작성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2]</li> <li>- 학교장 보고</li> </ul> </li> <li>2. 조사 및 심의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사안 접수 보고서(교직원용) 작성 및 심의 의뢰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3], [1-3-1]</li> </ul> </li> <li>3. 신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 신고[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4], [1-4-1]</li> <li>- 성평등가족부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5]</li> </ul> </li> </ol>
		↓
긴급 보호 조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분리(15쪽 참고)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1-3-2], [1-3-3]</li> </ul> </li> <li>2. 요청 시 신고인(피해자) 전문기관 지원 연계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6-1], [6-2]</li> </ol>
		↓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접수</li> <li>2. 신고인(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 <span style="color: green;">권고</span> [2-1], [2-2], [2-2-1]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에 의한 사안 발생 시 교직원 대상 전수조사 실시</li> <li>- 관련자 해당 부서 협조(교무실, 행정실)</li> </ul> </li> <li>3.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2-10], [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접수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li> </ol>
		↓
심의 및 결과 보고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 계획 수립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li> <li>- 당사자 및 심의위원 참석 안내, 제척·회피·기피 확인</li> </ul> </li> <li>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6], [3-6-1]~[3-6-3]</li> <li>3.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사립: 법인)]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7]~[3-8-2]</li> <li>4.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감사 요청(감사부서)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3-9], [3-9-1]</li> </ol>
		↓
재발 방지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4-2]</li> <li>- (교직원)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4-3]</li> <li>- 교육 결과 보고서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7-1] 활용 모니터링</li> </ul> </li> <li>2.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서 제출 <span style="color: orange;">필수</span> [4-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교육청·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로 제출</li> </ul> </li> </ol>

다. 교원[신고인(피해자)]-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접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사안 인지 및 접수(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희망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 사안일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교권 업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침해 미인정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가능(관련 서류 이관)</li> <li>※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미희망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가능</li> </ul> </li>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작성 <b>필수</b> [1-1]</li>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작성 <b>선택</b> [1-2]</li> <li>- 학교장 보고</li> </ul> </li> <li><b>2. 조사 및 심의 의뢰(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사안 접수 보고서(교직원용) 작성 및 심의 의뢰 <b>필수</b> [1-3], [1-3-1]</li> </ul> </li> <li><b>3. 신고 및 통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 신고[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b>선택</b> [1-4], [1-4-1]</li> <li>- 성평등가족부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b>선택</b> [1-5]</li> </ul> </li> </ol>
	↓	
긴급 보호 조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분리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분리(15쪽 참고) <b>필수</b> [1-3-2], [1-3-3]</li> </ul> </li> <li><b>2. 요청 시 신고인(피해자) 전문기관 지원 연계</b> <b>선택</b> [6-1], [6-2]</li> </ol>
↓		
사안 조사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사실 확인(조사) 협조</b> <b>필수</b> <b>선택</b> [2-3]~[2-8]</li> <li><b>2. 학생(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학생생활교육 담당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 요청 시 교육청에서 조사 가능 <b>선택</b> [8-1], [8-1-1]</li> </ul> </li> <li><b>3. 학생 사실 확인서 공문 발송</b> <b>필수</b> [1-6]</li> </ol>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접수</b></li> <li><b>2. 신고인(피해자), 참고인(성인) 조사</b> <b>필수</b> <b>선택</b> [2-3]~[2-9]</li> <li><b>3.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b> <b>필수</b> [2-10], [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접수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li> </ol>
↓		
심의 및 결과 보고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심의 계획 수립</b> <b>필수</b> <b>선택</b>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li> <li>- 당사자 및 심의위원 참석 안내, 제척·회피·기피 확인</li> </ul> </li> <li><b>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b> <b>필수</b> [3-6], [3-6-1]~[3-6-3]</li> <li><b>3.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사립: 법인)]</b> <b>필수</b> [3-7]~[3-8-2]</li> </ol>
↓		
재발 방지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선도위원회 개최,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행위 학생 조치</li> <li>-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 <b>선택</b> [4-2]</li> <li>-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 <b>선택</b> [4-4]</li> </ul> </li> <li><b>2.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서 제출</b> <b>필수</b> [4-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성폭력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교육청·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로 제출</li> </ul> </li> </ol>

라. 직원[신고인(피해자)]-학생(피신고인)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접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안 인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대장 작성 <b>필수</b> [1-1]</li> <li>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작성 <b>선택</b> [1-2]</li> <li>학교장 보고</li> </ul> </li> <li>조사 및 심의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사안 접수 보고서(교직원용) 작성 및 심의 의뢰 <b>필수</b> [1-3], [1-3-1]</li> </ul> </li> <li>신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기관 신고[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b>선택</b> [1-4], [1-4-1]</li> <li>성평등가족부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 <b>선택</b> [1-5]</li> </ul> </li> </ol>
	↓	
긴급 보호 조치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분리(15쪽 참고) <b>필수</b> [1-3-2], [1-3-3]</li> </ul> </li> <li>요청 시 신고인(피해자) 전문기관 지원 연계 <b>선택</b> [6-1], [6-2]</li> </ol>
	↓	
사안 조사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 확인(조사) 협조 <b>필수</b> <b>선택</b> [2-3]~[2-8]</li> <li>학생(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학생생활교육 담당자</li> <li>학생 사실 확인서 공문 발송 <b>필수</b> [1-6]</li> </ol>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접수</li> <li>신고인(피해자), 참고인(성인) 조사 <b>필수</b> <b>선택</b> [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자 해당 부서 협조(교무실, 행정실)</li> </ul> </li> <li>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b>필수</b> [2-10], [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안접수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li> </ol>
↓		
심의 및 결과 보고	교육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 계획 수립 <b>필수</b> <b>선택</b>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li> <li>당사자 및 심의위원 참석 안내, 제척·회피·기피 확인</li> </ul> </li> <li>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b>필수</b> [3-6], [3-6-1]~[3-6-3]</li> <li>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통보[당사자 및 소속 학교(사립: 법인)] <b>필수</b> [3-7]~[3-8-2]</li> </ol>
	↓	
재발 방지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선도위원회 개최,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행위 학생 조치</li> <li>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 <b>선택</b> [4-2]</li> <li>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 <b>선택</b> [4-4]</li> </ul> </li> <li>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서 제출 <b>필수</b> [4-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교육청·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로 제출</li> </ul> </li> </ol>

## II

#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1. 접수단계 [ 학교 ]
2. 조사단계 [ 교육(지원)청 ]
3. 심의단계 [ 교육청 ]
4. 종결단계 [ 학교 ]



# 1

## 접수단계 [학교]

### 가. 업무흐름

- ※ 1, 2, 3, 4단계는 학교 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동시 진행 가능
- ※ 학생 간 사안: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준용하여 처리

## II

주관	1단계	인지 및 접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이 학교 상담 신청 또는 시교육청 신고센터 접수</li> <li>▪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사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 개요 및 증거 정황 정보, 고충 파악</li> </ul> </li> <li>▪ 성사안 처리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경우 접수 후 조사 및 심의 의뢰 의무</li> <li>성인의 경우 조사 신청 및 심의 단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1단계에서 종결</li> <li>※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은 상담에 속하며 신고가 아님</li> </ul> </li> </ul>	<p>[ 1 - 1 ] 성희롱·성폭력고충처리대장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p> <p>[1-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p>[1-3-2]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신고인(피해자)용]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p> <p>[1-3-3]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피신고인용)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p>	
	↓	2단계	조사 및 심의 의뢰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사안 접수 보고 및 심의 의뢰</li> </ul>	<p>[1-3]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p> <p>[1-3-1] 성사안 접수 보고서 (학생/교직원)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p>	
학교	3단계	신고 및 통보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성인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신고 가능 당사자 고소 진행 가능</li> <li>※ 신고인(19세 미만 학생 피해자)인 경우 신고 의무</li> </ul> </li> <li>▪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 제출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li> </ul>	<p>[1-4] 수사의뢰 표지 공문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p>[1-4-1] 수사의뢰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9933; padding: 2px;">필수</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 (112, 117 신고 가능)</p> <p>[1-5]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	4단계	긴급보호조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유지 철저, 접촉 금지 등 2차 피해 예방 준수 고지</li> </ul> </li> <li>▪ 전문기관 지원 연계[신고인(피해자)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치료, 노무, 법률상담 지원 가능</li> <li>※ 성사안 접수 시 50만 원, 성희롱·성폭력 인정 시 추가 50만 원 이내, 법률 상담지원 30만 원 이내 지원</li> <li>※ 친족 성폭력 등 심각한 성폭력으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쉼터) 의뢰 가능</li> </ul> </li> </ul>	<p>[6-1] 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 상담비 지급 청구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p>[6-2]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p>[6-3]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지원요청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선택</span></p>	

## 나. 처리절차




※ 1, 2, 3, 4단계는 학교 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동시 진행 가능

1단계	인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이 학교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고지, 고충 호소단계</li> <li>- 사안 인지 및 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li> <li>- 신고인(피해자)이 성사안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사안 해결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성인 피해자)이 조사 신청 및 심의 단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접수·상담 단계에서 종결</li> <li>※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은 상담에 속하며 신고가 아님(단, 학생의 경우 신고 의무)</li> </ul> </li> </ul>	

대상별 행정사항	서식
	[1-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span style="color: red;">필수</span> [1-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span style="color: blue;">선택</span> [1-3-2, 3]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 <span style="color: red;">필수</span>
<p><b>✓ 신고인(19세 미만 학생 피해자) - 피신고인(성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절차:</b> 학교장 및 종사자(이하: 교직원) 인지 → 성고충상담원 및 담임교사에게 알림 → 학교장(감) 보고 → 48시간 이내 신고의무(112), 보호자에게 신고 안내 → 성고충처리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이 이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는 타 기관 수사의뢰로 조사착수 가능함을 안내</li> <li>※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유</li> </ul> </li> </ul> <p><b>✓ 신고인(성인 피해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절차:</b> 신고인(피해자) 등 상담신청 → 고충상담[사실관계 확인 및 신고인(피해자) 의사 확인] → 고충상담 접수 → 학교장(감) 보고 → 성범죄인 경우, 신고인(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고소), 사안 접수 적극 안내 → 성고충처리대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시 대리신고 가능</li> <li>※ 신고인(성인 피해자)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성고충처리대장에 '신고 미희망' 체크, 종결 가능</li> <li>※ 교육활동 침해 사안일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요청(교권 업무 담당자)</li> <li>※ 기관장에 의한 위력적 성범죄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li> <li>※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성고충상담원인 경우, 해당 상담원을 제외한 다른 성고충상담원이 담당</li> <li>※ 외부절차(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신청, 성폭력상담전문기관 이용 등) 활용 가능 안내</li> </ul> </li> </ul>	

II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성고충상담 단계 및 질문 예시

상담 절차	사안 접수 과정 진행 요령
 <p>사안 개요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고충처리제도 안내(관련 법령, 지침, 고충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li> <li>- 비밀유지의 원칙 및 준수 협조 안내</li> <li>- 고충 파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상담 녹음 동의 여부 의사 확인</li> <li>- 당사자 관계 및 관련자 정보 확인(당사자·관련자 정보: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li> <li>- 사안 개요 파악(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행위 유형, 반복성, 지속 기간 등)</li> <li>- 사안이 야기한 고충(피해, 어려움) 파악(생각·심경, 일상·직장생활의 어려움: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직무 상 불이익 등)</li> <li>- 증거 정황 정보 확인(목격자, 증거자료, 일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진료기록 등)</li> <li>- 피해 대응과 피신고인의 전후 행동 파악(피해 당시·이후 대응, 주변인 상의)</li> <li>- 피신고인이 신고인(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피신고인의 이전 유사 언동 여부</li> </ul> <p>[사안 개요 파악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li> <li>•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li> <li>•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li> <li>•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li> <li>•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li> <li>•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li> </ul>
 <p>사안 해결 방안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이 원하는 사안 해결 방안 탐색(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것, 예상되는 최상·최악의 상황)</li> <li>- 피신고인·성고충상담원·관리자·학교에 바라는 사항 파악(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당사자 분리, 행위자 조치·징계, 재발방지 등)</li> <li>- 다양한 해결 방식의 장·단점 검토 및 신고인(피해자)이 원하는 해결 방안 선택[우선 상담 지속, 조정 및 중재, 조사·심의 처리, 외부 해결(국가기관·사법기관) 등]</li> </ul> <p>[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 관련하여 상담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li> <li>•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li> <li>• 상담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li> <li>• 성고충상담창구에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li> <li>• 주변인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li> <li>•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li> <li>•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li> </ul>
 <p>명시적으로 상담 종결을 원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안 재발 시 대처 요령과 추후 즉각 재상담이 가능함을 안내</li> <li>-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li> </ul>
 <p>신고 결정 시 사안 접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 비밀유지 준수</li> <li>- 성사안의 상급기관 보고</li> <li>- 교육청 사안 담당부서 등을 사전 안내</li> </ul>
 <p>상담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 관리자에게 보고</li> <li>※ 성고충상담일지는 성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별도 관리</li> <li>- 신고인(피해자)이 선택한 해결 방안으로 사안 처리 절차 진행</li> <li>- 미신고 결정으로 인한 상담 종결 시 종결 사유 기록</li> </ul>

### 성고충상담 시 유의사항

- 신고인(피해자)이 희망하는 성별의 상담자가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 진행
- 신고인(피해자)이 익명 처리를 원할 경우 사안 기록 및 사안 처리 과정 전반에 익명처리 진행
- 경청·심리적 공감 및 지지를 통한 라포 형성
-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과 경청
- 사안에 대한 호기심 질문이나 성적 굴욕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음
- 향후 결과에 대해 자의적·단정적 판단으로 신고인(피해자)이 왜곡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함
- 신고인(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캐묻거나 자세하게 말하라고 채근하지 않음
- 신고인(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음
- 신고인(피해자) 스스로 이야기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배려

## 2단계

## 조사 및 심의 의뢰

- 성사안 접수 후 교육청에 성사안 사실 확인 조사 및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

### 대상별 행정사항

#### ✓ 행정절차

- 성사안 조사 및 심의를 의뢰하는 성사안 접수 보고서 제출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인(피해자)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가능
  - ※ 학교 내 성사안의 신고인(피해자)이 장애인·다문화 학생이거나, 친족 등에 의한 성폭력, 언론 보도 등 긴급·중대 사안인 경우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860-0150)**로 유선 및 공문 보고 필수

#### 서식

- [1-3]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필수**
- [1-3-1] 성사안 접수 보고서  
(학생용/교직원용) **필수**

#### ✓ 업무분장

구분	학교급	유·초·중학교	고·특수학교
	기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주무		- (유·초 교원) 유초등교육지원과 - (중 교원) 중등교육지원과 - (유·초·중 행정·공무직) 행정지원과	- (교원) 인성체육급식과 - (행정직) 총무과 - (공무직) 노사행정정보과 - (사립행정직) 학생학부모지원과
지원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관련 직군에 따라 해당 부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교육청 총무과·학생학부모지원과·노사행정정보과 등)와 협조하여 운영(담임장학사 지원 가능)

**3단계** 신고 및 통보

- 1단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
-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통보(선택)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사실관계 및 상태 확인
  - 수사기관 신고[신고인(학생 피해자) 사안은 의무, 교직원 사안은 선택]
  - 성평등가족부 통보에 관한 신고인(피해자) 의사 확인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예방통합관리시스템-사건관리시스템 입력

**서식**

- [1-4] 수사의뢰 표지 공문 **필수**
- [1-4-1] 수사의뢰서 **필수**
- [1-5]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 **선택**

**4단계** 긴급보호조치

- 1단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
- 학교장은 신고인(피해자) 등의 의사 및 적극적 판단에 따라 응급처치·진료·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신속한 보호조치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사실관계 및 상태 확인  
(필요시) 외부기관 연계 응급조치 → (학생) 보호자 통보 → [신고인(피해자)] 분리의사 확인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분리조치 → (요청 시) 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 ※ 긴급 보호조치는 신고인(피해자)의 상태 및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
  - ※ 친족 성폭력 등 중대한 성폭력으로 적극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쉼터) 의뢰 가능

✓ 분리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 필요성 반드시 검토
-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분리 방법(동선, 업무공간 분리, 수업배제, 업무배제, 병가, 연가 승인 등) 및 기간을 결정하고 적극 분리 권고
- 다만,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이 이미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추가 분리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별 접촉(유선 연락 등) 금지 고지
- 관련 법령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된 사건의 경우 '직위해제(인사담당부서 판단) 가능'
- 사안 관련 내용이나 신고인(피해자) 인적 사항 등 비밀 엄수
- 피신고인 및 관련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고지

**서식**

- [6-1] 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 상담비 지급 청구서 **선택**
- [6-2]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선택**
- [6-3]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지원요청서 **선택**

## 분리조치 필수 근거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이 아닌 필수임. 단, 분리조치 실시 전 피해자의 의사 확인 필요, 의사에 반하여 분리조치 하지 않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③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②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 계약제교원 등 적용)

**제14조**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리조치 예시

구분	분리조치 실시 방법 예시
학생-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시 조퇴, 연가 혹은 병가(교원인사과 시간강사 수당 지원)</li> <li>- 필요시 최대한의 동선 분리(수업, 식사 장소 및 시간, 교내 활동 등 전반적으로 고려), 수업배제 등</li> <li>- 최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분리</li> <li>- 성희롱 인정 시 전보조치, 계약 해지 등</li> </ul>
교직원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분리: 교무실 분리 등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되, 건물이 한 개 동인 경우 층 또는 실을 구분하여 사용토록 안내</li> <li>- 동선 분리: 출·퇴근/등·하교 시간 동선과 시간 분리, 식사 장소 및 시간 분리</li> <li>- 업무 분리: 협업수업 배제, 결재 방법 변경, 담당업무 변경 등</li> <li>- 온라인 분리: 문자, 전화, 카톡, 온라인 접촉 차단</li> <li>- 성희롱 인정 시 전보조치, 계약 해지 등</li> </ul>

##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무원 직위해제의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

#### ▶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성범죄 등의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포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계약제 교원 계약해지 사유

※ 카, 타, 파의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카. 성범죄로 기소, 약식명령,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타.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포함), 약식명령,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파. 금품·향응 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하. 채용 과정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 학교 근무 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경력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할 경우

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너.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026년 국공사립 유·초·중·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기관) 업무 담당자 역할

구분	역할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사안 대응 및 원칙적 절차 총괄</li> <li>-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분리조치</li> <li>-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의료·심리상담·법률 지원 확인</li> <li>- 피해자보호 및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예방</li> <li>- 추가 피해 가능성 의심될 경우 전수조사 협조</li> </ul>
교감 (행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 신고</li> <li>- [학생 신고인(피해자)은 신고 의무, 성인 신고인(피해자)은 명시적 반대 없을 경우 신고]</li> <li>-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방지 준수 총괄</li> <li>- <b>피신고인에게</b> 사안발생 안내, 분리조치를 위한 복무 및 관련 사항 통보 (해당 부서별 관련자 안내: 교감, 행정실장)</li> <li>- 교육지원청, 교육청 보고 확인(중대사안인 경우 우선 유선보고)</li> <li>- 신고인(학생 피해자) 사안: 보호자와 사안 공유, 의사소통 체계 단일화</li> <li>- 전수조사 일정 등 사안조사 지원</li> </ul>
성고충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 접수,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의뢰 공문 교육청 제출</li> <li>- <b>신고인(피해자)에</b> 대해 사안 처리 절차 안내</li> <li>-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예방</li> <li>- 성평등가족부 사안발생 통보[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시]</li> <li>- 성평등가족부 재발방지대책 보고</li> <li>- (선택) 피해자 의료·심리상담·법률 지원 안내</li> <li>- (선택) 필요시 외부 전문가 연계 지원</li> </ul>
관련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고인(피해자)이 학생인 경우,</b> 학교폭력 책임교사, 아동학대 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이 유기적 협조</li> <li>- 보호자에게 안내, 112 수사기관 신고/교육청 보고</li> <li>- 신고(피해) 학생 상담 및 학생 보호를 위해 정서적 지지</li> <li>- 보호자에게 사실 안내(※ 보호자 안내 전, 교감과 협의 필수)</li> <li>- 외부전문가 조사 요청 시 협조</li> </ul>

II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 2차 피해 방지 책무

###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 및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학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사안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사안 관련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해촉을 요청하여야 함

###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고충상담원의 책무

- 성고충상담원은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 측의 평소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비난하거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사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됨

#### 【성고충상담원, 담당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2차 피해 행위】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제6조 제4항

###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책무

- 구성원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중용하거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나 평판 등을 소문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구성원,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가해자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가족같이 지냈잖아...” 등)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제8조



## 2 조사단계 [교육(지원)청]

가. 업무흐름도

<p>주관</p> <p>교육청</p>	<p><b>1단계</b>      <b>사실 확인조사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조사 일정 조율, 모니터링</li> <li>조사순서: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피신고인이 교직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실시</li> </ul> </li> </ul>	<p><b>서식</b></p> <p>[2-1] 전수조사 설문지(교직원용) 권고</p> <p>[2-1] 전수조사 설문지(학생용) 권고</p> <p>[2-2] 전수조사 결과 표지 공문 권고 필수</p> <p>[2-2-1] 전수조사 결과 권고 필수</p> <p>[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p>
↓		
<p>교육(지원)청</p>	<p><b>2단계</b>      <b>사실 확인-신고인(피해자) 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학생 피해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외부 전문가 요청 시) 교육청 지원 조사 가능</li> </ul> </li> <li>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정보 공유 범위 알림</li> <li>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수신 확인 가능한 수단 활용</li> <li>사실관계 정보와 신고인(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li> <li>사안 발생 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필요시 참고인 진술 요청</li> </ul> <p><b>2-1단계</b>      <b>조정·중재[신고인(피해자) 요청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시 조정·중재 가능</li> <li>피해사실 확인 후 신고인(피해자) 요구사항 확인</li> <li>조정·중재안 도출(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li> </ul>	<p><b>서식</b></p> <p>[2-3] 출석 통지서 필수</p> <p>[2-4] 사실 확인(조사)서면 진술서 (불출석) 선택</p> <p>[2-5]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필수</p> <p>[2-7]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용) 필수</p> <p>[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p> <p>[2-9] 조사 문답서 필수</p> <p><b>서식</b></p> <p>[5-1]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선택</p> <p>[5-1-1] 종결요구 및 동의서 선택</p> <p>[5-2] 사과문 및 각서 선택</p> <p>[5-3] 합의서 선택</p>
↓		
<p>교육(지원)청</p>	<p><b>3단계</b>      <b>사실 확인-피신고인(행위자) 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신고인에게 사안접수 사실 고지(유선, 이메일 등)</li> <li>외부 전문가에 의해 조사</li> <li>당사자 서약: 사안내용, 개인 신상정보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서약, 2차 피해 금지 당부</li> <li>사안 처리 절차 및 규정 안내</li> <li>2회 이상 출석 거부 시 진술 의사 없음으로 간주</li> <li>사실 관계 증거자료 제출 및 필요시 참고인 진술 요청</li> </ul> <p><b>3-1단계</b>      <b>조정·중재[신고인(피해자) 요청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중재안을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알리고, 합의 도출</li> <li>합의 시 해당 학교에 사안 종결 통보</li> <li>미합의 시 4단계로 이행</li> </ul>	<p><b>서식</b></p> <p>[2-3] 출석 통지서 필수</p> <p>[2-6]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피신고인용) 필수</p> <p>[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p> <p>[2-9] 조사 문답서 필수</p> <p><b>서식</b></p> <p>[5-1]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선택</p> <p>[5-1-1] 종결요구 및 동의서 선택</p> <p>[5-2] 사과문 및 각서 선택</p> <p>[5-3] 합의서 선택</p>
↓		
<p>교육청</p>	<p><b>4단계</b>      <b>사실 확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행위자) 조사 문답서 확인</li> <li>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 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li> <li>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의 쟁점 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li> </ul>	<p><b>서식</b></p> <p>[2-10] 조사 결과 보고 표지 공문 필수</p> <p>[2-10-1] 조사 결과 보고서 필수</p>

## 나. 처리절차

### 1단계

### 사실 확인조사 계획

- 성사안 발생 공문 접수 후 교육청이 사실 확인조사를 진행하는 단계

#### 대상별 행정사항

#### ✓ 행정절차

- 공문접수(공문 접수 후 20일 이내 조사 완료)
- 사안 개요 확인
- 조사계획 수립
- 조사위원 배정, 비밀유지서약
- 조사대상자, 일정, 장소 조율 확정
- 사실 증빙자료 파악
- 전수조사
  - 신고인(학생 피해자)-피신고인(교직원) 사안인 경우 실시
  - 신고인(학생·교직원 피해자)-피신고인(관리자) 사안인 경우 실시
- 전수조사 결과 통보
  - 교육청(필수), 경찰서·구(군)청(권고)

#### 서식

[2-1]	전수조사 설문지(교직원용) 권고
	전수조사 설문지(학생용) 권고
[2-2]	전수조사 결과 표지 공문 권고 필수
[2-2-1]	전수조사 결과 권고 필수
[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

#### 조사위원의 역할

- 당사자 관련 개략적 정보(학교급, 당사자의 신분/성별/연령대), 사안 유형 파악, 신고인(피해자) 등의 상태 및 요구사항, 긴급조치 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사실 확인(조사) 문답서를 사전 작성하여 당사자 사실 확인(조사) 준비
- 참고인·피신고인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동의를 받아 녹음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 적격성,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여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 등 조사
- 조사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 확인(조사) 문답서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영상파일, 문자메시지, SNS 화면캡처) 제출 등을 안내하고, 조사 내용은 서면 기록하며, 조사 결과를 사실 확인(조사) 문답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확인(자필서명 필수)
- 사안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 및 관련 서류 전체를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II

2단계

사실 확인 - 신고인(피해자) 조사

-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 진행
- 신고인(피해자)이 반복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출석 통지서 전달(출석 통보)
-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피해자)],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
- 대면 문답 조사 원칙이며 필요시 전화, 서면, 이메일로 문답조사 가능
- 조사 문답서(자필서명)

서식

- [2-3] 출석 통지서 필수
- [2-4] 사실확인(조사)서면  
진술서(불출석) 선택
- [2-5]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신고인(피해자)용] 필수
- [2-7]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용) 필수
- [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
- [2-9] 조사 문답서 필수

✓ 신고인(피해자) 조사

- 신고인(피해자)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인(피해자)의 현재 상황 및 요구사항 확인
- 불필요하거나 반복 질문, 대담 중용, 신고인(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신고인(피해자)을 비난하는 발언 금지
- 목격자 및 증거 등을 확인하고 신고인(피해자)이 제출한 입증자료 검토
- 사실확인(조사) 문답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피해자)이 확인 서명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신고인(피해자)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안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도록 주의
- ※ 신고인(피해자)이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요청할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 가능

✓ 참고인 조사(목격자가 있는 경우)

-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
- 참고인의 인적 사항, 참고인을 포함한 당사자와의 관계, 업무 관련성 및 개인적 친분 여부 등 확인
- 발생 시각 및 장소, 행위 내용과 횟수, 목격자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질문
-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거나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등에 대해 질문
-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아닌 직접 목격한 내용 질문
-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참고인의 신변이 보호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이메일로 조사 가능
- 참고인의 신분과 진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 목격자가 없는 경우 성고충처리대장 및 신고인(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최초로 들은 사람을 참고인 범위에 포함 가능

2-1단계

조정·중재

- 신고인(피해자)이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조정·중재 시도

대상별 행정사항

서식

- [5-1]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선택
- [5-1-1] 종결요구 및 동의서 선택
- [5-2] 사과문 및 각서 선택
- [5-3] 합의서 선택

행정절차

- 신고인(성인 피해자)이 명시적으로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

-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 신고인(피해자)이 내부적 해결을 원하는 경우
- 신고인(피해자)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 신고인(피해자)의 요구사항 확인 및 조정·중재안 도출
- 합의서는 비밀유지 준수 및 개인적 연락/접근/접촉금지 및 신고인(피해자)의 요청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종결 요구 및 동의서, 합의서 작성(자필서명)
- ※ 임의조정·중재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신고인(피해자) 안내

- 피신고인이 조정·중재안 동의 시 성립
-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양측 동의 시 대면 조정·중재도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추후 합의서 내용 불이행, 성희롱 재발, 2차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조사신청 가능

II

3단계

사실 확인 - 피신고인(행위자) 조사

- 피신고인 대상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자료 제출 가능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피신고인 출석통지
- 피신고인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 2차 피해 금지 등 안내
- 신고인(피해자) 출석 통보 시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시 진술 및 자기 방어권 포기로 간주
- 조사 문답서 작성

✓ 피신고인 조사

- 사전안내(조사 목적 및 진행 과정 설명,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확인, 신고인(피해자)과의 관계 파악,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한 사전 양해, 진술거부권 고지 등)
- 사안 내용 및 신고인(피해자)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유지 준수 안내
- 조사 기간 중 신고인(피해자)에게 사적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안내
  - ※ 신고인(피해자)에게 사적 접촉 및 보복 행위 시 또는 신고 사실 유포 시 2차 피해로 간주, 이는 추가 징계사유 및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
- 조사의 공정성과 진술의 정확성을 위해 피신고인의 동의를 있다면 조사 과정 녹취 가능
-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질문하고 피신고인의 현재 상황 확인
  - ※ 참고인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
- 신고인(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재차 질문하여 확인, 기존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재확인
-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진행

서식

- [2-3] 출석 통지서 필수
- [2-6]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피신고인용) 필수
- [2-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
- [2-9] 조사 문답서 필수

**3-1단계** **조정·중재**

- 신고인(피해자)이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조정·중재 시도

<p><b>대상별 행정사항</b></p> <p><b>✓ 행정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작성(자필 서명)</li> <li>-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에게 1부씩 배부</li> <li>- 해당 학교에 성사안 종결 알림 공문 발송</li> </ul> <p><b>✓ 피신고인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인이 조정·중재안에 동의 시 성립</li> <li>-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양측 동의 시 대면 조정·중재도 가능</li> <li>- 추후 합의서 내용 불이행, 성희롱 재발, 2차 피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 예정임을 안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서식</b></p> <p>[5-1]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small>선택</small></p> <p>[5-1-1] 종결요구 및 동의서 <small>선택</small></p> <p>[5-2] 사과문 및 각서 <small>선택</small></p> <p>[5-3] 합의서 <small>선택</small></p>
---	--

**4단계** **사실 확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를 작성하는 단계

<p><b>대상별 행정사항</b></p> <p><b>✓ 행정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내용 기재</li> <li>-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의 현재 상황, 특이사항, 신고인(피해자) 요구사항 작성</li> <li>- 사안진행 및 조치사항, 진행 경과 작성</li> <li>- 해당 사안 쟁점사항 중 성고충심의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자 의견 작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조사자 의견 예시(성고충심의위원회 논의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피해자) 진술만 존재하고 참고인은 목격한 바 없으며, 피신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li> <li>• 피신고인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나 구체적 행위 내용이 신고인(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어떤 행위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서식</b></p> <p>[2-10] 조사 결과 보고 표지 공문 <small>필수</small></p> <p>[2-10-1] 조사 결과 보고서 <small>필수</small></p>
---	---

3

# 심의단계 [교육청]

## 가. 업무흐름도

교육청	주관	1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비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조사 의견서 기초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작성</li> <li>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작성</li> <li>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위원, 당사자</li> <li>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최소 7명 이상) 및 회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조사 문답서 및 조사 의견서</li> <li>제출 증빙자료</li> <li>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동선 파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표지 공문 (심의위원용) <b>필수</b></li> <li>[3-1-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심의위원용) <b>필수</b></li> <li>[3-1-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 검토의견서 <b>필수</b></li> <li>[3-4]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안내 (당사자용) <b>필수</b></li> <li>[3-5] 성고충심의위원회 서면 진술서 (당사자용) <b>선택</b></li> </ul>
	↓			
		2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누설 금지 의무 안내</li> <li>위원 제척·회피·기피 여부 확인</li> <li>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별도 장소 대기(동선 겹치지 않도록)</li> <li>사실 확인조사 결과 보고</li> <li>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피해자)/참고인(필요시)/피신고인</li> </ul> </li> <li>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li> <li>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권고</li> <li>행위자 조치</li> <li>재발방지대책 권고</li> <li>기타 당부사항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 성고충심의위원회 회피 신청서 (심의위원용) <b>선택</b></li> <li>[3-3]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당사자용) <b>선택</b></li> <li>[3-6]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표지 공문 <b>필수</b></li> <li>[3-6-1] 성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b>필수</b></li> <li>[3-6-2] 비밀유지 서약서(심의위원용) <b>필수</b></li> <li>[3-6-3]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b>필수</b></li> </ul>
			↓	
		3단계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 결과 보고</li> <li>심의 결과 통보-피해자/행위자/소속학교/(사립: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 등기우편 발송</li> <li>당사자 소속학교(사립: 학교법인): 공문 발송</li> </ul> </li> <li>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감사부서로 자료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 결과 보고서/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 자료</li> <li>피해자/행위자/(참고인) 조사 문답서 및 조사 의견서</li> <li>전문가 의견서</li> <li>제출 증빙자료(일체)</li> </ul> </li> </ul> <p>※ 제출부서: 관련자 인사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7]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학교 및 기관) 표지 공문 <b>필수</b></li> <li>[3-7-1]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b>필수</b></li> <li>[3-8]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표지 공문 <b>필수</b></li> <li>[3-8-1,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신고인, 피신고인)</li> <li>[3-9]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 표지 공문 <b>필수</b></li> <li>[3-9-1]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서 <b>필수</b></li> </ul>

## 나. 처리절차

### 1,2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조사 종료 후 신속히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안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2차 피해 방지 포함), 그 밖에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

#### 대상별 행정사항

#### ✓ 행정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참석 요청 공문 → 참석자 회신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서식

[3-1] [3-1-1] [3-1-2] [3-2] [3-3] [3-4] [3-5]  
[3-6] [3-7] [3-8] [3-9]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비

구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의해 구성(비법정 자문기구)</li> <li>-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내3, 외4)으로 구성</li> <li>-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li> <li>-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심의위원회 불가 <b>※ 간사는 심의의결권 없음</b></li> </ul>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조율</li> <li>- 개최 7일 전 심의위원 및 당사자에게 일정 알림(필요시 참고인에게도 통지)</li> <li>- 관련자[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에게 출석 안내 통보 및 참석 여부 확인(관련자의 희망에 따라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활용)</li> <li>- 서면통보 시 심의위원 및 당사자에게 제척·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li> <li>- 관련자가 출석을 원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불가능한 경우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li> <li>· 신고인(피해자)의 신뢰관계인, 관련자의 법률대리인 동석 가능</li> </ul> </li> <li>- 서류는 익명(A, B 등) 처리, 심의 결과 통보를 위한 주소 확인</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고충심의위원회의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보호 및 지원</b></li> <li>-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기반으로 위원 간 신중·적법하게 검토(고도의 개연성 여부)</li> <li>- <b>심의 결과는 행위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신청 근거로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음</b></li> <li>-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라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며, 원칙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함</li> <li>-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li> <li>- <b>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불가함(별도 불복 절차 없음)</b></li> </ul>

## II

제척·회피·기피

구분	내용	주체
제척	당사자와 친족 특수관계 위원은 자동 배제	위원회 판단
회피	위원이 스스로 회피 사유 밝히고 불참 신청	위원 본인
기피	당사자가 공정성 우려 시 기피 신청 가능	위원회 판단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구분	내용
당일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동선 확인 (대기실 위치, 동선 및 시간 배분)</li> <li>- 회의 자료 및 관련 자료 비치</li> <li>- 위원 및 관련자 참석 여부</li> </ul>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개회</li> <li>-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안내, 안전 상징</li> <li>- 위원 제척·회피·기피 안내</li> <li>- 위원회 진행 주의사항 전달(비밀누설 금지 등)</li> </ul>
사안 보고 쟁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경과 신고내용 및 조사 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li> <li>- 주요 쟁점 관련 협의</li> </ul>
신고인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 본인 확인</li> <li>- 기피 신청과 유의사항 안내</li> <li>- 요구사항 청취, 질의응답</li> <li>- 사후절차 안내</li> </ul>
참고인 진술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 본인 확인</li> <li>- 사안 관련 의견 청취, 질의응답</li> </ul>
피신고인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 본인 확인</li> <li>- 기피 신청과 유의사항 안내</li> <li>-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li> <li>- 사후절차 안내</li> </ul>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의사항</b></li> <li>①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li> <li>②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li> <li>③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li> <li>④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li> <li>※ 행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 부여 불가</li> <li>※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척·회피·기피 위원은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li> </ul>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내용 정리 및 의결서 서명</li> </ul>

3단계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 (정규직) 감사부서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 (비정규직) 해당 기관(학교)으로 심의 결과 보고서 송부(해당 학교에서 인사조치 결정)
- 관련자[신고인(피해자) / 피신고인(행위자)]에게 통보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내부결재)
- 심의 결과 통보: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소속학  
(사립: 학교법인)  
[당사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소속학교  
(사립: 학교법인): 공문 발송]
- 성희롱·성폭력 인정 시 해당 감사부서로 심의 결과  
관련 자료 송부  
(심의 결과 보고서/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  
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조사 문답서 및  
의견서/제출 증빙자료)
- 감사관실에서 인사부서로 감사처분심사협의회 결과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송부
- 인사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서식

- [3-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표지 공문(내부결재) **필수**
- [3-6-1, 2, 3] 등록부, 비밀유지 서약서,  
의결서 **필수**
- [3-7]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학교 및 기관) 표지 공문 **필수**
- [3-7-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필수**
- [3-8]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표지 공문 **필수**
- [3-8-1,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 피신고인용) **필수**
- [3-9]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요청  
표지 공문 **필수**
- [3-9-1]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서 **필수**

※ 정규직인 경우 심의결과 성희롱 인정 시 감사부서로 심의결과, 관련 자료 송부

송부 부서	국·공립	유·초등 교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중학교 교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고·특수학교 교사	시교육청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유·초·중학교 일반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고·특수학교 일반직	시교육청 감사관
		공무직 등	시교육청 감사관
사립	유·초·중·고 교사, 일반직, 공무직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임용협력팀)	
국·공·사립	관리자 (교장, 교감, 5급 이상 행정실장)	시교육청 감사관	
송부 자료	국·공립	심의 결과 보고서 / 회의 자료 / 회의속기록 / 관련자[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조사 문답서 및 조사 의견서 / 전문가 의견서 / 관련자 제출 증빙자료 일체	
	사립	심의 결과 보고서	

- ※ 신고인/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 결과 등기우편 또는 메일 송부  
(신고인 통보 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향후 2차 피해 발생 시 성고충상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력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피신고인 통보 내용) 비밀유지 준수, 신고인(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 금지에 관한 사항 안내
-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불가능함을 안내**, 향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군별로 행정심판, 소송 및 소청심사 제기 가능

### 성희롱·성폭력 미인정 시

-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 및 소속 학교에 통보  
[비밀유지 준수,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 금지 사항 안내]
- 신고인(피해자) 후속 상담  
: 다른 구제 절차 안내(국가인권위원회, 민사,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
  - ※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가능
- 성희롱으로 미인정되더라도 피신고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괴롭힘, 성차별, 인권침해 등)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 안내

# 4 종결단계 [학교]

## 가. 업무흐름도

주관	1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서식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및 사안 발생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또는 심의한 모든 사안 대상)</li> <li>사안종결 후 모니터링</li> </ul>	<p>[4-2]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b>선택</b></p> <p>[4-3]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서(교직원용) <b>선택</b></p> <p>[4-4]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서 <b>선택</b></p>
		↓	
	2단계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 <b>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b></li> </ul> <p>※ 제출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초·중학교: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li> <li>고·특수학교: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li> </ul> <p>※ 관련 문서 보존: 10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진술서 등 관련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관리(보안 철저)</p>	<p>[4-1]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 대책 보고 표지 공문 <b>필수</b></p> <p>[4-1-1]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 대책 <b>필수</b></p> <p>※ 성평등가족부 지정 액셀 서식 (시트변형 금지)</p>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 지급 청구</li> </ul>	<p>[6-1] 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 지급 청구서 <b>선택</b></p>

## II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 나. 처리절차

### 1단계

###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후속 조치 시행

#### 대상별 행정사항

#### ✓ 행정절차

- 심의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① 사안 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③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
- 학교 내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및 운영
- 행위자(학생, 교직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

#### 서식

- [4-2]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선택]
- [4-3]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서 (교직원용) [선택]
- [4-4]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서 [선택]

#### •피해자보호

- 피해자행위자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 적절한 조치 시행, 심리상담·의료지원 등 내·외부기관 연계
  - ※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시행 불가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피해자에게 모니터링 목적과 방법 등 사전 안내, 일정 기간 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결

- 피해자 추가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시행 등

####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 •학생 및 교직원 교육

-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2차 피해 예방 포함) 등
  - ※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은 '조직문화 개선'으로, 학교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의지 표명과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 제고에 있음

2단계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 성고충심의위원회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사안발생 통보 여부·심의 결과에 따른 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 \* 학생 간 학교폭력 중 성폭력(형법상 추행 이상, 디지털 성폭력 전체) 발생 시에도 학교폭력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서식에 따라 처리

대상별 행정사항

✓ 행정절차

-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 내용: 사안 개요, 사안 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 강화 방안
- 기한: 발생 사실을 안 날(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피해자 의사,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제출

\* 공문명: 「학교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예시)

비공개 열람 제한(1, 6호), 열람 시 암호 확인 체크, 직원열람제한 영구

\* 제출 부처

- 유·초·중학교: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고·특수학교: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피해자와 행위자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행위자 소속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행위자 소속기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서식

- [4-1]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 표지 공문 필수
- [4-1-1]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 필수  
\* 성평등가족부 지정 엑셀 서식 (시트변형 금지)

II

학교 업무 담당자 역할

학교 담당자	역할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리·감독</li> <li>- 학교 내 재발방지대책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관리·감독</li> </ul>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직원 관리</li> <li>-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사항 관리</li> <li>-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운영 관리</li> <li>- (성희롱·성폭력 인정 시) 행위자 조치사항 이행 관리·감독</li> </ul>
성고충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학교장에게 보고</li> <li>-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li> <li>-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li> <li>-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일정 조율 및 신청, 실시</li> <li>- (성희롱·성폭력 인정 시)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및 지속적인 관리</li> </ul>

### Ⅲ

# 학교 내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 단계별 서식 목록

단계	담당 기관	내용	관련 서식	P	
접수	학교	피해사실 인지	1-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41
			1-2	<b>선택</b>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42
		접수	1-3	<b>필수</b>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 교직원이 피신고인(행위자)일 경우	43
				<b>필수</b>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 학생이 피신고인(행위자)일 경우	44
			1-3-1	<b>필수</b> 성사안 접수 보고서(학생용)	45
				<b>필수</b> 성사안 접수 보고서(교직원용)	46
			1-3-2	<b>필수</b>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신고인(피해자)용]	47
			1-3-3	<b>필수</b>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피신고인용)	48
		신고 및 통보	1-4	<b>필수</b> <b>선택</b> 수사의뢰 표지 공문 ※ 18세 미만(아동학대 신고 의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 성인(신고 선택)	49
			1-4-1	<b>필수</b> <b>선택</b> 수사의뢰서	50
			1-5	<b>선택</b>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엑셀서식) ※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없는 경우 통보	51
			1-6	<b>필수</b> 학생 사실 확인서 ※ 학생이 피신고인(행위자)일 경우 작성	52

단계	담당 기관	내용	관련 서식	P
조사	교육 (지원)청	전수 조사	2-1 권고 전수조사 설문지(교직원용)	53
			2-1 권고 전수조사 설문지(학생용)	55
	교육 (지원)청	관련자 조사	2-2 전수조사 결과(필수 교육청, 권고 경찰·구(군)청 통보용) 표지 공문	57
			2-2-1 전수조사 결과(필수 교육청, 권고 경찰·구(군)청 통보용)	58
			2-3 필수 출석 통지서	59
			2-4 선택 사실 확인(조사) 서면 진술서(불출석)	60
			2-5 필수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피해자)용]	61
			2-6 필수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피신고인용)	62
			2-7 필수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용)	63
			2-8 필수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64
			2-9 필수 조사 문답서	65
			2-10 필수 조사 결과 보고 표지 공문	66
			2-10-1 필수 조사 결과 보고서	67

단계	담당 기관	내용	관련 서식	P
심의	교육청	심의 계획	3-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표지 공문 (심의위원용)	68
			3-1-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심의위원용)	69
			3-1-2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 검토 의견서	70
			3-2 <b>선택</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피 신청서(심의위원용)	71
			3-3 <b>선택</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당사자용)	72
			3-4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당사자용)	73
			3-5 <b>선택</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서면 진술서(당사자용)	74
			3-6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표지 공문	75
		심의	3-6-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76
			3-6-2 <b>필수</b> 비밀유지 서약서(심의위원용)	77
			3-6-3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78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3-7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학교 및 기관) 표지 공문	79
			3-7-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80
			3-8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당사자) 표지 공문	81
	3-8-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피해자)용]		82	
	3-8-2 <b>필수</b>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피신고인용)		83	
	3-9 <b>필수</b>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 표지 공문		84	
	3-9-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서		85	

III

단계	담당 기관	내용	관련 서식	P	
종결	학교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조치이행	4-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 표지 공문	86
			4-1-1	<b>필수</b>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엑셀서식)	87
			4-2	<b>선택</b>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90
			4-3	<b>선택</b>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서(교직원용)	91
			4-4	<b>선택</b>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서	92
참고 서식			5-1	<b>선택</b>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93
			5-1-1	<b>선택</b> 종결 요구 및 동의서	94
			5-2	<b>선택</b> 사과문 및 각서	95
			5-3	<b>선택</b> 합의서	96
			6-1	<b>선택</b> 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 지급 청구서	97
			6-2	<b>선택</b>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98
			6-3	<b>선택</b>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지원요청서	99
			7-1	<b>선택</b>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기관용)	100
			8-1	<b>선택</b>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 표지 공문 ※ 학생조사 신청 시	101
			8-1-1	<b>선택</b>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서	102

1-1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피해자(신고인)		피신고인(행위자)	
		성명	소속 부서	성명	소속 부서
1	00.00.00.	김 (이)	부 (부)	김	부
2	00.00.00.	이	부	이	부

고충 내용	피해자 희망 사안 처리 절차					계	교감
	고충상담	조정·중재	교권 보호 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심의 의뢰	수사 기관		
성희롱 성폭력 등	상담만 희망 시 접수하지 않음	학교 관리자의 중재	교권 보호 담당자에게 접수	조사 신청서 접수	아동학대 신고	서명	서명
성희롱 성폭력 등	상담만 희망 시 접수하지 않음	학교 관리자의 중재	교권 보호 담당자에게 접수	조사 신청서 접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위반 신고	서명	서명

- ※ 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 피해자와 신고인 성명을 모두 기재[예시: 피해자가 홍길동, 신고인이 김철수인 경우 → 홍길동(김철수)]
- ※ 신고 여부 작성 시 O, X 표기 후 신고 미희망, 신고 보유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1-2 **선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일지

접수 번호: ○○학교 제20○○-○호

상담일	20    년    월    일    시		상담자	
내담자	성명		성별	
	소속 부서 / 학년 반		생년월일	
	① 학생 ② 교원 ③ 직원 ④ 보호자 ⑤ 기타(            )			
상담 방법	① 대면 ② 전화 ③ 온라인 ④ 기타			
<b>상담내용</b>				
<p>※ 신고인(피해자) 주요 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p> <p>※ 접수 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절차 안내문: 서식 00)</p> <p>※ 신고인(피해자) 요청사항 확인(분리조치 및 전문 상담 등)</p> <p>※ 관련자[신고인(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행위자), 행정 처리 담당자 등]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p> <p>※ 상담일지는 성고충상담원이 작성</p> <p style="padding-left: 20px;">필요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외부전문기관 등으로 상담 진행 가능</p> <p>※ 신고인(피해자)이 학생이면 관련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유</p> <p>※ 신고인(성인 피해자)이 명시적으로 사안접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사안 접수 유보 가능</p>				
내담자가 학부모 외 제3자, 대리인일 경우 관계 제시				
[상담단계 및 신고인(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기재] ※ 해당란에 ○ 표시				
고충상담	조정·중재	교권보호 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및 심의 의뢰	수사기관
상담 희망 절차 미희망	시교육청 주관	교권보호 담당자에게 접수	조사신청서 접수	경찰 신고

1-3 필수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 교직원이 피신고인(행위자)인 경우에만 사용

○○학교

수신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경유)

제목 (20○○-○호) 학교 사안접수 보고

1. 관련: ○○학교 제20○○-○호
2. ○○학교-20○○-○호 사안 접수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붙임 ○○학교-20○○-○호 성사안 접수 보고서 1부.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 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input type="text"/>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 문서발송 수신처

대상	수신처
교원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행정직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총무과)
공무직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행정정보과)
공통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III

1-3 **필수** 성사안 접수 보고서 표지 공문

※ 학생이 피신고인(행위자)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용

○○학교

수신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경유)

제목 (20○○-○호) 학교 사안 접수 보고

1. 관련: ○○학교 제20○○-○호
2. ○○학교-20○○-○호 사안 접수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 붙임 1. ○○학교-20○○-○호 성사안 접수 보고서 1부.  
2. 학생 사실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각 1부(없을 시 생략).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 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checkbox"/>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 문서발송 수신처

대상	수신처
교원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행정직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총무과)
공무직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행정정보과)
<b>공통</b>	<b>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b>

※ 학생 사실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는 [서식 1-6] 참고

1-3-1 **필수** 성사안 접수 보고서(학생용)

접수 번호: ○○학교 제20○○-○호

관련자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피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신고내용/ 피해사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충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일시, 장소,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증거자료 유무 등) 피해조사위원이 참고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기술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필요조치/ 요구사항	피신고인(행위자)과 분리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등							
희망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조사(전수조사 포함) 및 심의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조정·중재 ※복수 선택 가능, 피해자 지원 또는 조정·중재만 먼저 신청하더라도 추후 조사나 심의를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지원사항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무상담비 지원    ※복수 선택 가능							
전수조사 일시/장소	일시			대상학년 및 학급				
	1안	20 . . . (요일) 00:00			( )학년 ( )학급			
	2안	20 . . . (요일) 00:00						
사건 통보·신고	성평등가족부 사건 발생사실 통보	동의( ) 반대(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희망 여부	희망( ) 미희망( )			
	※ 학생의 경우 수사기관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절차 안내 여부 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안내문을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예( ) 아니오( )							
위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신고하고 사실확인(조사)을 신청합니다. 2000년 0월 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II

학교 내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1-3-1 **필수** 성사안 접수 보고서(교직원용)

접수 번호: ○○학교 제20○○-○호

관련자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피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성별		연락처		이메일	
신고내용/ 피해사실	<p>육하원칙에 따라 고충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일시, 장소,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증거자료 유무 등) 피해조사위원이 참고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기술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p>						
필요조치/ 요구사항	<p>피신고인(행위자)과 분리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등</p>						
희망 조치사항	<p><input type="checkbox"/> 심의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조정·중재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관리자)인 경우] 전수조사                  ※ 복수 선택 가능, 피해자 지원 또는 조정·중재만 먼저 신청하더라도 추후 심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희망 지원사항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무상담비 지원 ※ 복수 선택 가능</p>						
전수조사 일시 /장소 (피신고인이 관리자인 경우)	일시			교직원 수			
	1안	20 . . . (요일)	00:00				
2안	20 . . . (요일)	00:00					
사건 통보·신고	성평등가족부 사건 발생사실 통보		동의( ) 반대( )		수사기관 신고		동의( ) 반대( )
	<p>※ 교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절차 안내 여부 확인	<p>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안내문을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예( ) 아니오( )</p>						
<p>위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신고하고 사실확인(조사)을 신청합니다.</p> <p>2000년 0월 0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1-3-2 필수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신고인(피해자)용]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2.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

본 절차는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가. 사안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를 통해 성사안 접수 보고서 접수  
나. 신고인(피해자) 의사 확인: 신고인(피해자)이 희망하는 조치사항을 확인 이후 후속절차 결정  
다. 사안조사(사실관계 확인): 신고인(피해자)이 조사 및 심의를 희망할 경우, 사실 확인(조사) 출석 통지서 발송 후 조사 진행(피해호소 내용, 요청사항 등 확인)
- 라. 조정·중재(선택): 신고인(성인 피해자)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등 조정·중재 요구 시 관련 절차 진행
  - 성인식개선지원센터에서 진행
  - 조정·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신청기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 마.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조사 완료 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사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정규직인 경우 성희롱·성폭력 판단시 인사부서로 자료 송부예정

바.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료비, 심리상담비, 법률상담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일상회복을 희망하는 신고인(피해자)
- 지원내용	(초기 지원) 개인 심리 회복 지원(1인당 5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비) (추가 지원)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인정’ 시 추가 지원(50만 원 이내) (법률상담지원)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인성체육급식과로 공문 제출(문서24 활용 가능)

사. 외부기관을 통한 절차 병행: 교육청 내 사안 처리와 별개로 신고인(피해자) 희망 시, 수사기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별도 절차 진행 가능

부산광역시교육감



1-3-3 **필수**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피신고인용)

성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문[피신고인용]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

본 절차는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가.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피신고인(행위자)는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신고인(피해자), 신고인, 증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유발행위 금지**

\*2차 피해: 부당한 인사조치,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전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나. 사안조사(사실관계 확인)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에서 사실 확인(조사) 출석 통지서 발송 예정
- 조사과정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관계 확인

다. 조정·중재 절차[신고인(피해자) 희망 시]

- 신고인(피해자)이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조정·중재를 요구할 경우 관련 절차 진행 가능
- 조정·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주의사항: 피신고인 또는 제3자가 중재를 명목으로 신고인(피해자)에게 개별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접촉 시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별건으로 추가 신고될 수 있음**

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조사 완료 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사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진행됩니다.

3. 피신고인의 권리

- 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②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법적 조력 등을 위해 대리인과 동반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④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1-4

필수

선택

## 수사의뢰 표지 공문

※ 피해자가 18세 미만(아동학대 신고 의무),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 성인(신고 선택 가능)

### ○○학교

수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유)

제목 학교(기관) 내 사안 수사의뢰

#### 1. 근거

-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수사를 의뢰합니다.

붙임 수사의뢰서 1부. 끝.

※ 초·중·고등(특수)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

※ 신고·처벌 의사 확인 및 신고내용 명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 공문 발송 권장**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찰청 협의사항) 「청소년보호매뉴얼」 p.19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신고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문 작성 시 본 글상자는 삭제 후 사용

1-4-1 필수 선택 수사의뢰서

신고자	성명		소속/직위 (학생:학반)			
	연락처					
발생 일자	20 . . .(요일) 00:00					
인지 일시	20 . . .(요일) 00:00					
관련자	피해자	성명	소속/직위(학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자	성명	학생의 경우 기재	연락처		학생의 경우 기재
	행위자	성명	소속/직위(학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자	성명	학생의 경우 기재	연락처		학생의 경우 기재
사안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참고사항	수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1-5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사실 통보서(엑셀서식)

제출기관명	부산 ○○학교
담당자(직급)	○○○(교사)
연락처	051-000-0000

□ 사안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시점	• 사안 발생일(최초 발생)	특 정 일 <input type="checkbox"/> (2026-00-00) 특정기간 <input type="checkbox"/> (2026-00-00 ~ 2026-00-00) 특정불가 <input type="checkbox"/>
	• 사안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안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6-00-00)
	• 사안 통보일	날짜 기재 (2026-00-00)
사안 유형	• 사안발생기관명	
	• 사안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유관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각급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 기관의 장애 의한 사안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피해자(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input type="checkbox"/> 상급자-하급자 <input type="checkbox"/> 하급자-상급자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교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생-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사안 유형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여성 <input type="checkbox"/>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input type="checkbox"/> (신고일 날짜: ) 신고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호 조치 사항	•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조치예정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전보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조치예정 <input type="checkbox"/> -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외부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주요 내용 (사안 신고· 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안 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없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통보

III

1-6 **필수** 학생 사실 확인서

※ 학생이 피신고인(행위자)인 경우 작성

※ 사안번호: ○○학교 제20○○-○호

성명		학년-반	-	성별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 교직원	소속				
	성명				
사안 내용	※ 성사안 관련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 학생 사실 확인서는 사안 조사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필요한 도움 등)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사실확인서 작성자	학 생:	(서명)	

2-1

**권고** 전수조사 설문지(교직원용)

※ (신고인) 교직원 - (피신고인) 관리자

설문방법 안내문

이 설문은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직하면서 **교직원(관리자 포함)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당했거나 본 것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라며,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허위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시”

- ① 신체적: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 접촉, 안마 강요 등
- ② 시각적: 카톡, 문자 등으로 성적인 행위, 언행,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내는 행위 등
- ③ 언어적: 성관계/성행동 묘사, 가슴/엉덩이 등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사안 처리를 위해 연락처 기재가 필요하나,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연락처 미기재시 사안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설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폭력 신고 전용 메일(schoolsafe@korea.kr)**
-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pen.go.kr>)**
- ☎**117, 112, 860-0150**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의 주체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소중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 유레카 등 활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 고등학교, 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실시

##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지(교직원용)

※ (1~5) 해당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교직원(교사, 행정실 직원, 학생 등)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해당란에 “V” 표)

① 있다( ) ⇒ 2번으로 이동                      ② 없다( ) ⇒ 3번만 작성

2. 같은 학교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직접 목격 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 내용을 적어주세요.(단,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은 제외)

2-1. 누가(행위자 성명)

2-2. 언제

2-3. 어디서

2-4. 누구에게(피해자)(해당란에 체크)

① 본인                      ② 동료 교직원                      ③ 학생                      ④ 기타( )

2-5. 어떻게

3.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경우 작성내용에 대해 추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                      ② 동의하지 않음( )

4. (신고 및 상담 희망 시)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보유·이용 기간: 조사 종료 시까지(종료 후 즉시 폐기)

(전화번호: 010-\_\_\_\_\_)

5. 기타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2-1 권고 **전수조사 설문지(학생용)**

※ 신고인(학생 피해자) - 피신고인(교직원)

설문방법 안내문(보관용)

이 설문은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교에 재학하면서 **교직원(관리자 포함)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당했거나 본 것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라며,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과 허위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시”
- ① 신체적: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 접촉, 안마 강요 등
  - ② 시각적: 카톡, 문자 등으로 성적인 행위, 언행,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내는 행위 등
  - ③ 언어적: 성관계/성행동 묘사, 가슴/엉덩이 등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신고인(피해자)의 전화번호는 경찰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인(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사안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폭력 신고 전용 메일(schoolsafe@korea.kr)**
-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pen.go.kr>)**
- ☎117, 112, 860-0150으로 알려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 학생은 <설문지> 3번 칸에 성폭력 피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적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보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공정한 설문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구청 이동보호팀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으며, 설문 참여하는 여러분은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과 친구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안내문은 소지하여 활용하시고, 작성을 마친 설문지는 뒤집어 두면, 뒤에서부터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 인쇄하여 활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 고등학교, 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실시

##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지(학생용)

※ (1~5) 해당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직원[교원(교장·교감 포함) 행정실 직원 등]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해당란에 “V” 표)

- ① 있다( ) ⇒ 2번으로 이동                      ② 없다( ) ⇒ 3번만 작성

2. (1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한 자만 해당) 피해를 당했거나 본 것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적어 주세요.(들은 것은 적지 않음)

누가 (행위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피해자) (해당란에 V표)		어떻게
			본인	친구	

3. 기타 성희롱·성폭력 피해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

4. (피해자인 경우만 해당) 피해자 보호조치를 희망합니까?(해당란에 “V” 표)

- ① 예( )                                      ② 아니오( )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요양 등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등을 통해 지원

5. (피해자인 경우만 해당) 작성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수사기관 및 구청 아동학대 담당팀에서 추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해당 구청 아동학대 담당팀에 보관되며 조사가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와 ‘비동의’ 해당란에 V표)

- 기록 내용 이용에 대한 동의(적으신 내용을 감사, 수사에 동의할 경우)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이용(전화번호):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조사(감사, 수사에 동의할 경우)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보유·이용 기간: 조사 종료 시까지(종료 후 즉시 폐기)

(전화번호: 010- )

2-2 전수조사 결과(필수 교육청, 권고 구(군)청·경찰서 통보용) 표지

○○교육(지원)청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20○○-○호) 전수조사 결과 발송

1. 관련: ○○학교 제20○○-○호
2. ○○학교-20○○-○호 전수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붙임 ○○학교-20○○-○호 전수조사 결과 1부.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input type="text"/>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 문서발송처

구분	문서발송처
16개 구(군)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16개 구(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III

2-2-1 전수조사 결과보고(필수 교육청, 권고 구(군)청·경찰서)

※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및 유관기관으로 공문 발송

1. 학교 현황

학 교 명		주소	
학 교 장		전화	
교 감		번호	

2. 조사 일시: 20 . . ( ), 00:00~00:00

3. 조사 장소:

4. 조사 개요

- 가. 전체 인원: 00명
- 나. 참여 인원: 00명
- 다. 불참 인원: 00명
- 라. 불참 사유: 예) 결석 00명, 지각 00명

5. 조사 결과

연 번	피해 일시	피해학생 (학반, 성별 전화번호)	행위 교직원명 (성별)	피해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희망여부	학교폭력심 의위원회 희망여부
1		홍길동(남) 010-1234-5678			○	○
2		김부산(여) 010-1234-5678			○	X

2-3 **필수** 출석 통지서

1. 접수 번호	(2000-0호)		
2. 대상자	성명		소속
3. 대상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 ※ 해당란에(✓) 표기		
4. 신고사유	참고인에게는 생략		
5.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6. 근거			

1. 위 사안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 확인(조사)을 하고자 합니다.
2. 공정한 사실 확인(조사)을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00. 00. 00.( ) 00:00  
 나. 장소: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피신고인이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출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사실 확인(서면) 진술서를 2000. 00. 00. (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피신고인의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연락, 관련 사실 유포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2000년 0월 0일

**부산광역시교육감(인)**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화 (사무실)		이메일	
------------	-------------	--	-----	--

2-4 **선택** 사실 확인(조사) 서면 진술서(불출석)

1. 접수 번호	(2000-0호)		
2.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명(성별)
		. . .	
연락처		이메일	
3.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란에(✓) 표기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실확인(조사)에 출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4. 진술 내용			
본인은(2000-0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신고인)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안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 (피신고인)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 등 사실관계를 기재 (참고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목격 등을 기재 서면 진술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별지마다 서명 필수			
2000년 0월 0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b>부산광역시교육감 귀중</b>			
※ 서면 진술서는 인편 또는 이메일(pdf 파일)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 기한(2000. 0. 0. 00시)까지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화 (사무실)		이메일

2-5 **필수**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피해자)용]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_\_\_\_\_은(는)

20 \_\_\_\_년 \_\_\_\_월 \_\_\_\_일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안내사항]**

본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사안 처리에 필요한 관계자(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 담당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협조(비밀유지 의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 ① 민감정보처리 목적: 신고사안 접수 및 사안 처리, 결과회신
- ②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안 내용 및 신상정보
- ③ 민감정보처리 의뢰부서: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
- ④ 민감정보 보유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 민감정보처리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안 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중**

**관련 근거**

-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 다. 「형법」 제307조

2-6 **필수**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피신고인용)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_\_\_\_\_은(는)

20 년 월 일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피신고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으며,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사안 처리와 관련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피신고인의 권리]**

- 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②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법적 조력 등을 위해 대리인과 동반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④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

- ① 조사단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 ② 사안 내용 및 신고인(피해자)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 ③ 조사기간 중 신고인(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접근,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전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2차 피해 유발 금지**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 ① 민감정보처리 목적: 신고사안 접수 및 사안 처리, 결과회신
  - ②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안 내용 및 신상정보
  - ③ 민감정보처리 의뢰부서: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
  - ④ 민감정보 보유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인적 사항과 사안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 서약 내용 위반 시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와 별개의 행위로 조사가 요구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감정보처리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안 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중**

**관련 근거(피신고인의 신분에 따른 관련 법 적용)**

-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2-7

**필수**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용)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_\_\_\_\_은(는)

20    년    월    일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의 참고인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비밀유지 의무)에 의거하여 사안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중**

**관련 근거**

-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2-10 **필수** 조사 결과 보고 표지 공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0-0호)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결과 보고

1. 관련: 00과-00(2000. 00. 00)
2. (2000-0호)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2000-0호) 성희롱·성폭력 조사 결과 보고서 0부.
2. (2000-0호)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문답서[신고인(피해자), 참고인, 피신고인] 0부.
3. 서약서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용] 각 0부.
4. 비밀유지 서약서(참고인용) 0부.
5.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0부.
6.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제출자료 일체.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input type="text"/>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 붙임파일 서식안내: 3[2-5/2-6], 4[2-7], 5[2-8]



3-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표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성고충심의위원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안내

---

1. 관련: ○○과-(20○○. ○○.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심의위원용) 1부. 끝.

3-1-1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 지침」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0. 00. 00.( ) 00:00
2. 장소:
3. 안건: (2000-0호)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4. 사안개요(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심의대상 사안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20 00년 0월 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참고 사항>

문의 사항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업무 담당자(전화: 051-860-076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2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

- 자료 검토 일시: 2026. 0. 0.(요일) 00:00~00:00 (4시간)
- 심의위원: 000 (인)
- 검토 의견

\* 작성법: 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①\*②\*⑤\* 반드시 기재 요청  
 \* 심의위원회 전 질의내용에 대한 중복여부 체크하여 질문 배분 예정

영역	검토의견
①* 신고인에게 질의 내용	
②* 피신고인에게 질의 내용	
③ 서기에게 질의 내용	
④ 논의 사항	
⑤* 종합적 의견	판례, 사건 견해 등



3-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p>「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합니다.</p>				
<p>20 . . . (서명 또는 인)</p>				
<p>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귀중</p>				

3-4

필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 귀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 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20○○. ○○. ○○.( ) ○○:○○
2. 장소:
3. 안건: (20○○-○호)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4. 사안개요(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붙임 서면 진술서(서식)

2000년 0월 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 참고 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업무 담당자(전화: 05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심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고충심의위원회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담당자에게 연락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 내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3-5 선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서면

1. 접수 번호	(2000-0호)		
2. 인적 사항			
소속		성명(성별)	(    )
직위(직급)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통지서 발송 주소			
3.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인(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란에(✓) 표기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진술 내용	본인은(2000-0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신고인(피해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안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 (피신고인)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 등 사실관계 등을 기재 (참고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목격 등을 기재 서면 진술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별지마다 서명 필수			
2000년 0월 0일 성명:                   (서명 또는 인)			
<b>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귀중</b>			
※ 서면 진술서는 인편 또는 이메일(pdf, 한글 파일 등)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 기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도착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화 (사무실)		이메일

3-6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표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1. 관련:

가. ○○학교-(20○○. ○○. ○○.) 20○○-○호 성사안 접수 보고서

나. ○○과-○○(20○○. ○○.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부.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비밀유지 서약서 ○부.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학교용, 당사자용) 각 1부.

5.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6.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행위자) 추가제출 자료 1부. 끝.

3-6-1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실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3-6-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2000-0호)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일시] 2000. 0. 0.( ) 00:00

[장소]

[사안 개요]

1. 신고인: 000

2. 피신고인: 000

3. 신고 내용

행위 1: ~

행위 2: ~

[심의결과]

구 분	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여부 <input type="checkbox"/></li> <li>• 2차 피해 여부 <input type="checkbox"/></li> </ul>	신고된 내용만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li> </ul>	

※ 내용 많을 시 별지에 기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00년 0월 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교육지원청, 학교(사립: 법인) 통보

3-7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학교) 표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학교장

(경유)

제목 (20○○-○호)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관련: ○○과-(20○○. ○○.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 (20○○-○호)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심의 결과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결과 제출

구 분	내용	비고
서 식	붙임2	서식변경불가
보고기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유의사항: 심의 결과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시 해당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철저, 2차 피해 방지 철저

붙임 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1부.

2. 보고서식(엑셀파일) 1부. 끝.

3-7-1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학교)

[안 건](20〇〇-〇호) 〇〇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일 시] 20〇〇. 〇〇. 〇〇.( ) 〇〇:〇〇

[장 소]

[사안 개요]

1. 신고인: 〇〇〇

2. 피신고인: 〇〇〇

3. 신고 내용

행위 1: ~

행위 2: ~

(※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결과 통보서에는 실명 표기, 단 신고자 요청이 있는 경우 익명 처리)

[심의결과]

구 분	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여부 <input type="checkbox"/></li> <li>• 2차 피해 여부 <input type="checkbox"/></li> </ul>	<i>신고된 내용만 판단</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li> </ul>	

※ 내용 많을 시 별지에 기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심의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절차로서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제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함)

20〇〇년 〇월 〇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3-8

필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당사자) 표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신고인, 행위자(※ 개별 등기우편 발송)

(경유)

제목 (20〇〇-〇호) 〇〇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 알림

1. 관련: 〇〇과-(20〇〇. 〇〇. 〇〇.)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 (20〇〇-〇호) 〇〇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고인)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향후 2차 피해 발생 시 성고충상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력 받을 수 있음  
 ※(피신고인) 비밀유지 준수, 신고인 및 참고인 등에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 유발 금지

붙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신고인, 피신고인용) 1부. 끝.

3-8-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판단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피신고인 조치의견	
	기관 조치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고충상담창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사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함 안내)

3-8-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판단여부	
피신고인 조치의견	
기관조치	

□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 안내

- (교육시간)                    시간 (20 . 00. 00.까지 이수 권고)
- (교육기관) 4곳 중에 1곳 선택하여 이수
  - ① 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역 인근) ☎ 583-7735
  - ②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수영역 인근) ☎ 753-1377
  - ③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모덕역 근처) ☎ 303-9622
  - ④ 강서가족상담센터(강서구 명지국제2로) ☎ 204-8896
- (교육비용) 시간당 5만 원(교육생 50%, 교육청 50% 부담)
- 이수 후 이수증을 학교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와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부산광역시교육감 (인)

3-9

**필수**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 표지 공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또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

### 1. 관련:

- 가. ○○학교-(20○○.○○.○○.)(20○○-○호)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나. ○○과-(20○○.○○.○○.)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2.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감사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며 감사처분심사협의 결과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관련 인사부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협조사항: 붙임파일 3~7까지 별도 송부이므로 담당자 지정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766) 유선 연락

- 붙임
- 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감사 요청서 1부.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 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
  - 5.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 문답서 및 조사 의견서 1부.
  - 6.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행위자) 제출자료 각 1부.
  - 7. 전문가 의견서 각 1부(붙임 3-7까지 별도 송부).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input type="text"/>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checkbox"/>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3-9-1



성희롱·성폭력 사안 감사 요청서

발생일	년 월 일		사안 유형	1:1 / 多:1 / 1:多 / 불특정다수		
사안접수일 (인지사점)	년 월 일					
기관명	00교육지원청(사안번호 2025-0호)		기관유형	각급학교		
신고인	직위		성명		성별	
피신고인	직위		성명		성별	
특이 사항	상급자에 의한 사안 여부(○, X)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 여부(○, X)					
사안 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익명 가능)						
조치 사항	상담/신고					
	조사					
	심의결과					
	분리조치					
	피해자 등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2차 피해 방지조치					
	기타	- 00 성폭력상담소 피해 교직원 상담 의뢰 및 치료비 지원 연계 등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익명 처리 가능

III

4-1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 표지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경유)

제목 ○○학교 사안 재발방지대책 보고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2.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엑셀서식, 관리대장 포함) 1부. 끝.

※ 문서발송 수신처

대 상	수신처
교 원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행정직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총무과)
공무직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행정정보과)
공 통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

4-1-1 **필수** 성희롱·성폭력 사안 재발방지대책(엑셀서식)

제출기관명	(부산) ○○학교
담당자(직급)	○○○(부장교사)
연락처	000-000-0000

□ 사안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사안 통보 여부	• 성평등가족부로 통보된 사안 여부	통보 <input type="checkbox"/> 미통보 <input type="checkbox"/>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착오, 누락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유)
시점	• 사안 발생일(최초 발생)	특정일 <input type="checkbox"/> (2026-00-00) 특정기간 <input type="checkbox"/> (2026-00-00 ~ 2026-00-00) 특정불가 <input type="checkbox"/>
	• 사안 인지일 ※ 신고인(피해자)으로부터 사안 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 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6-00-00)
	•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안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 (2026-00-00)
사안 유형	• 사안발생기관명	(부산)
	• 사안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유관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각급 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 기관의 장애 의한 사안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사안 유형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 피해자(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input type="checkbox"/> 상급자-하급자 <input type="checkbox"/> 하급자-상급자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교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생-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여성 <input type="checkbox"/>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input type="checkbox"/> (신고일 날짜: ) 신고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안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안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 사안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26-00-00)
	• 사안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초과□( 일)
	• 사안 조사 방식	기관(성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조사□, 인권위 조사□ 상급기관 조사□
	•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미고지□
	• 사안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미해당□
사안 심의 ※ 학폭위· 교보위를 개최한 경우 해당 내용 으로 작성 요망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학폭위 또는 교권위 개최□ 미개최□(사유 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불참□(사유 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타비위 행위로 판단□ 기타□(구체적 사항 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해당없음□
	•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 공간분리□, 유급휴가□, 배치전환□ 기타□(기재), 해당없음□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징계□,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기타□(기재) 해당없음□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구체적 사항 기재)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통지□ 미통지□
후속 조치	• 피해자 조치 사항(복수 체크 가능)	행위자와 공간분리□, 유·무급휴가□ 심리상담□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사항(복수 체크 가능)	징계□, 부서/근무장소 변경□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인식개선 교육□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해당없음□
	•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 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사안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input type="checkbox"/> (날짜 기재) 미수립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계획 별첨)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예방교육 실시/횟수	실시 <input type="checkbox"/> (몇 회)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직원 참여율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80~90% <input type="checkbox"/> 70~80% <input type="checkbox"/> 70% 미만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기관장 참여	참여 <input type="checkbox"/> (총 0회 중 0회) 불참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립시기 기재)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지침 별첨) (세부 기재)
	• 성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input type="checkbox"/> (여 0명 , 남 0명) 미지정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성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input type="checkbox"/> 비상설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0명) (내부 0명, 외부 0명) (여성 0명, 남성 0명)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

※ 최근 1년 기준 현황은 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 참고, 학생 간 사안의 경우 '기타 개선 계획'란 중심으로 작성 요망

※ 본 서식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서식으로, 각급 학교 내 사안에 대해 학폭위·교보위 등을 개회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작성

4-2

**선택**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학교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부문 및 인원	<input type="checkbox"/> <b>교직원 대상</b>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 교직원 성비에 특이사항 있을 시 기록		교직원수( )	
	<input type="checkbox"/> <b>학생 대상</b>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희망 학년( ) 희망 학급수( )	
희망주제	<b>교직원 대상</b>	※ 교육청 개발 자료 활용 연수		
	<b>학생 대상</b>	<input type="checkbox"/> 성희롱·성폭력 예방 <input type="checkbox"/> 성매매 예방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범죄 예방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예방 <input type="checkbox"/> 기타(희망주제: )		
희망일시 (교직원)	1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2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3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희망일시 (학생)	1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2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3순위	월	일	교시(00:00~00:00)
사안 내용				
기타 (요청사항/ 참고사항)				

4-3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신청서(교직원용)

학교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 정보	직위				
	성명				
	성별				
	연락처				
요청 시간	15시간	희망 일시	희망 일시가 있는 경우 기재		
사안 내용					

위와 같이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신청합니다.

20 . . .

(행위자 교육 운영기관)장 귀하

4-4 **선택** 행위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상담 신청서

학교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학반		연락처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사안 내용				
담임교사 확인사항	1. 보호자 동의를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보호자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청자(학생):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위와 같이 학생 성인지감수성 향상 상담 및 교육을 신청합니다.

20 . . . . .

(행위자 교육 운영기관)장 귀하

5-1



## 성사안 종결 알림 표지 공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신 ○○학교

(경유)

제목 학교 내 사안 종결 알림(○○교)

- 
1. 관련: ○○학교-(20○○. ○○. ○○.)(20○○-○호) 성사안 접수 보고서
  2. 학교 내 사안 종결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종결 요구 및 동의서(관련 서류 포함) 1부. 끝.

※ 관련 서류: 사과문(각서), 합의서 등



5-2

**선택** 사과문 및 각서

※ 사과문 및 각서 작성 시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대면 금지**

본 사과문은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에 접수된 성사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대상:

본인은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에서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행위 사실을 인정합니다.

신고인(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지침(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5-3

**선택** 합의서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작성

본 합의서는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신고인	○○○		
피신고인	△△△		

합의내용(예시)

- ① △△△이 작성한 사과문 내용 이행
- ② ○○○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금지
- ③

△△△은 이 사안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피신고인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안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은 이 사안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내용으로 사안을 종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붙임 사과문(작성한 경우 첨부)

20    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피신고인 ○○○ (서명)

6-1

**선택** 피해자 의료비·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 지급 청구서

피해자 지원 대상 정보				
피해자	성명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미인정	
	소속		청구신청 차수	
	연락처	(유선)	청구신청일	
		(핸드폰)		
주소				
피해자 지급 청구				
지원구분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외래, 입원치료)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 000병원(부산)	치료기간 (영수증 청구분 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심리상담기관) 000심리상담소(김해)	상담 일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00(서울)	상담 일시		
청구비용	병(의)원 치료비	진료비 총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	
	심리상담비			
	법률상담비			
	총액(환자 부담금+심리상담비+법률상담비의 합)			
지급계좌 정보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계좌 제공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예금주 계좌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비용 지급 시에 필수로 필요한 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1. 공통: 예금주 통장사본 2. 병(의)원 치료비: 보험회사제출용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3. 심리상담비: 심리상담확인서, 영수증 4. 법률상담비: 상담비용 영수증, 변호사사무실 상담 확인서 * <b>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되며, 신고일 이후 영수증만 제출 가능함</b>			
작성방법	1. 치료비, 심리상담비, 법률상담비는 <b>전액 선결제</b> 한 후 청구하여야 함 2. 의료비 지원 시 <b>치료 기간은 영수증 청구분에 기재된 치료기간 전체를</b> 기재하여야 함 3. 모든 제출 영수증의 항목별 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계좌로 입금가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III

학교 내 성사안 처리 관련 서식

6-2



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 친족 성폭력 등 심각한 성폭력으로 분리 및 쉼터 등 의뢰용

의뢰기관 (학교)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계 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계대상자	성명		성별	
	연락처		학년(연령)	
사안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수 선택 가능, 판단 불가 시 기타 선택 후 사유 작성			
사안내용				
의뢰사항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연계를 신청합니다.

2026. . . .

○○학교장

6-3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지원요청서

※ 상담일정 및 시간은 학교에서 방문 예정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가능

※ 심리상담은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임.

학교명			요청분야 및 일시	심리상담	월	일	시
교장	성명			법률상담	월	일	시
	전화번호			노무상담	월	일	시
교감	성명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해자 정보	성명		성별				
	직위	<input type="checkbox"/> 학생(    학년    반)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락처						
	보호자 성명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연락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사안 내용							
확인 사항	보호자 동의여부(학생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와 같이 찾아가는 피해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법률상담, 노무상담)을 신청합니다.

20 . . .

○○○학교(기관)장

Ⅲ

7-1 **선택** 행위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 행위자 교육 후 교육기관에서 발행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로 송부

1. 교육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2. 교육 내용

교육기관명		교육시간(차시)	총 시간 ※점심시간 제외
강사명		소속기관 (직위)	

3. 교육 이수 확인

차시	교육일	시작~종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생 서명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4. 교육생 참여도 및 특이사항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명) ○ ○ ○ ○ ○ ○    직인

8-1 **선택**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 표지 공문

※ 피해학생 대상 조사 신청 요청

○○○학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학교 내 사안 처리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

1. 관련: ○○학교 제20○○-○호
2. ○○학교 20○○-○ 사안 처리를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외부전문가 지원신청서 1부. 끝.

문서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발송해야함.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목록공개(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 직원열람제한	<input type="radio"/> 설정안함 <input type="radio"/> 결재완료일까지 <input type="radio"/> 지정날짜까지 <input type="checkbox"/> 영구
기타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암호확인 <input type="checkbox"/> 문서암호화(DRM)
결재완료 알림	<input type="checkbox"/> 결재완료시 기안자에게 내부메일 발송

※ 문서발송 수신처

대상	수신처
교원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행정직	- (유·초·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고·특수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총무과)
공무직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행정정보과)
공통	부산광역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8-1-1 **선택** 외부전문가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학교 제20○○-○호

<b>학교명</b>					
<b>교장</b>	성명		<b>교감</b>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b>담당자</b>	이름		전화번호		
<b>요청 분야 및 일정</b>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대상자 조사			년	월 일 00:00
	<input type="checkbox"/> 성희롱·성폭력 전문조사관 조사			년	월 일 00:00

<b>관련자 정보</b>	<b>신고인 (피해자)</b>	직위 (학반)		성명 (성별/나이)	
	<b>피신고인</b>	직위		성명 (성별/나이)	
<b>사안 내용</b>	(육하원칙에 의거 서술)				
<b>기타 사항</b>	외부전문위원 희망성별, 요청명수 등 기입				

본 사안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지원 요청에 동의합니다.

**학생:**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위와 같이 성사안 처리 외부전문위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 Ⅲ

## 부 록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기관
2. 성희롱·성폭력 구제 외부기관 안내 및 절차
3.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관리 및 징계 규정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기관

## 성희롱·(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 교육기관 현황

순	소속	연락처	주소	지원내용	행위자 교육
1	경찰	국번없이 112	각 구별	성폭력 피해 신고	×
		899-2548	부산광역시경찰청 여·정범죄수사계	장애학생, 13세 미만 사건	×
2	동부해바라기센터	501-91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지하1층	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가정폭 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	×
3	부산해바라기센터	244-1375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3층	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가정폭 력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지원 등	×
4	이젠센터 (부산여성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부전1동)	24시간 상담 상담, 보호시설 연계	×
	이젠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802-2082		자치경찰 상주, 원스톱지원디지털성범죄 긴급지원	×
5	(사)부산성폭력 상담소	558-8833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 허브스카이 A3동 06호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 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6	(사)부산여성의 전화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817-43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7	성가정폭력상담소부설 강서가족상담센터	204-889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비거주시설동 3층 41호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 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8	(사)부산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583-7735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 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9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753-1377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 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10	부산광역시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드림스텝) (청소년종합지원센터)	303-9623 303-96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부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전문멘토 연계	●
11	기장열린상담소	531-1366	부산광역시 기장읍 차성로290, 404호	상담, 의료 및 수사지원 연계, 법률, 심리지원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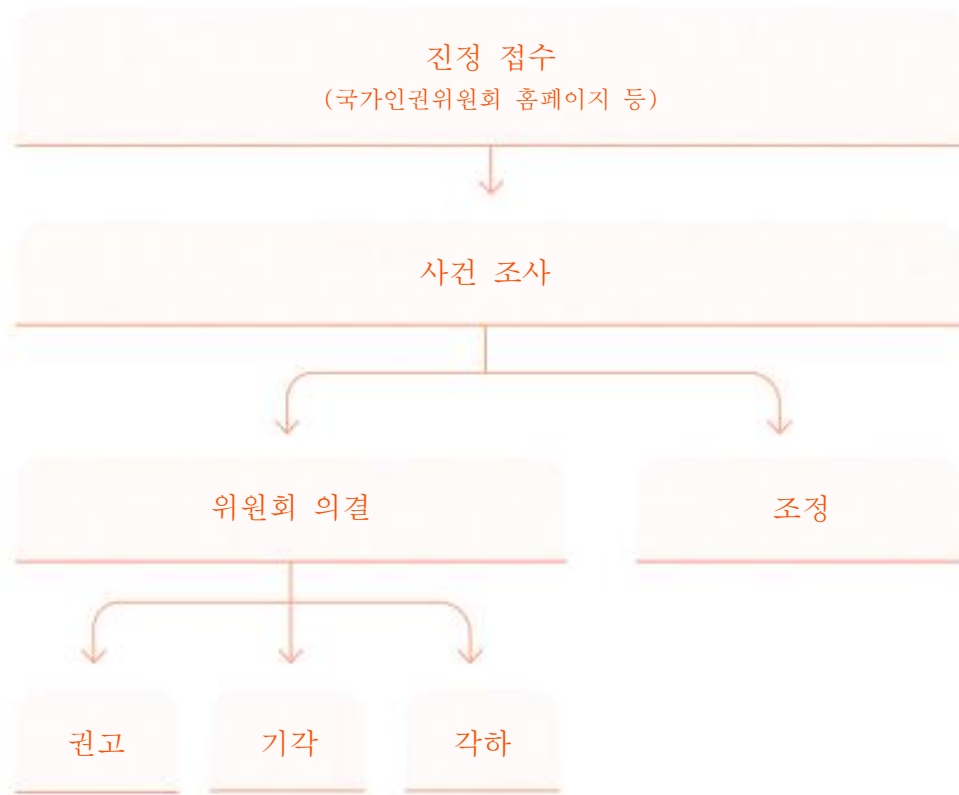
2

## 성희롱·성폭력 구제 외부기관 안내 및 절차

### 1 행정적 대응절차

#### 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절차

-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 + 성희롱 피해자, 피해 당사자 외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진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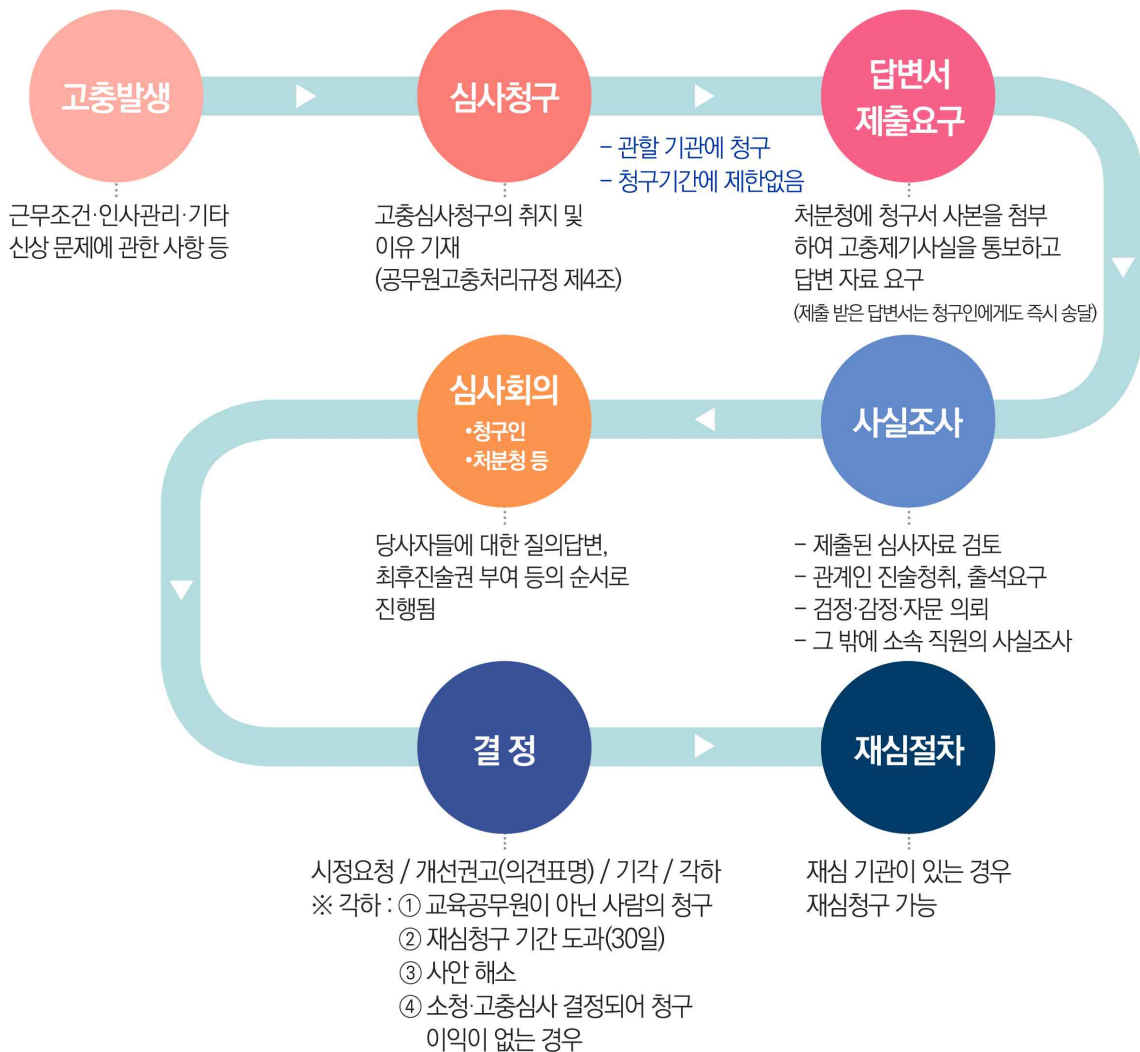


권고	성희롱 인정에 따른 조치 권고
기각	진정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 심리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진정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

## 나. 고충심사위원회

<p>교육공무원 보통고충 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직위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에 대해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li> <li>-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임용권자 등에 신고할 수 있음</li> <li>- 임용권자 등이 신고를 받으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고 동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li> <li>- 고충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li> </ul>
---------------------------------	--

### 고충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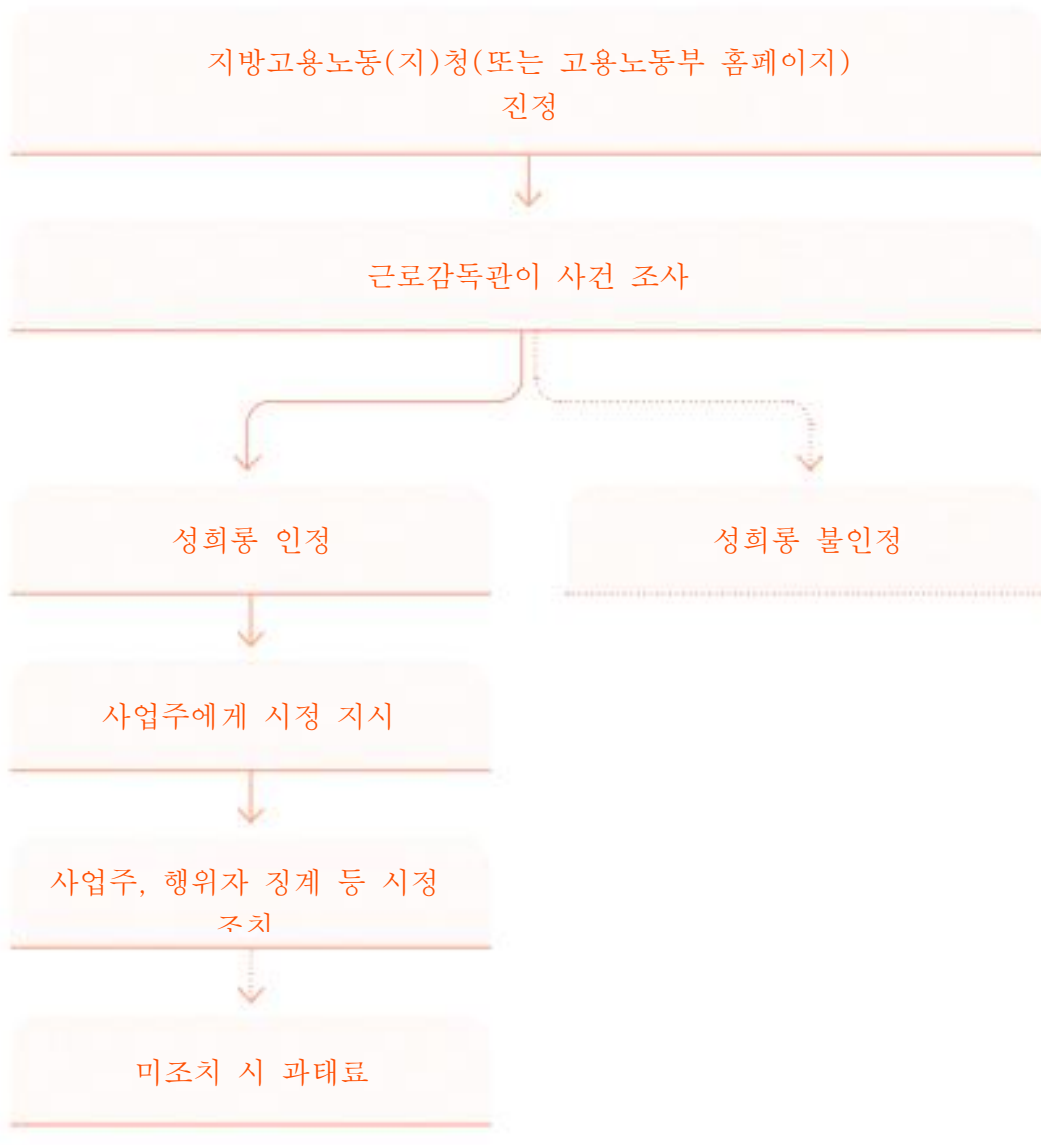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안내 리플릿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27&lev=0&statusYN=W&s=moe&m=0305&opType=N&boardSeq=90973>

다.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신고인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인 경우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진정, 고소
- + 피해 당사자 이외에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 고발 가능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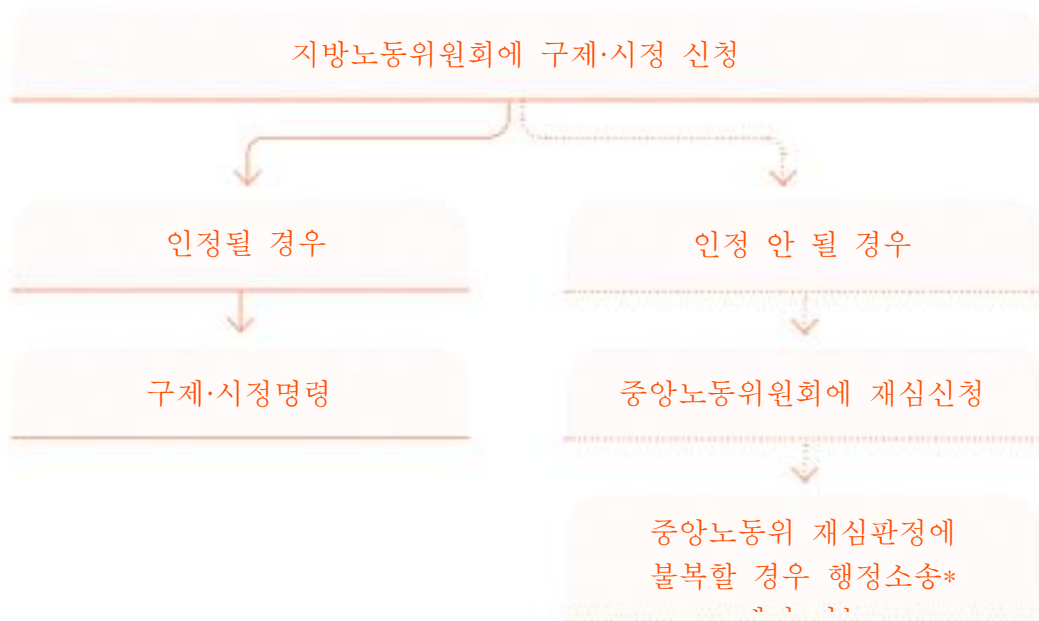
**노동위원회 구제·시정 절차**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 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단,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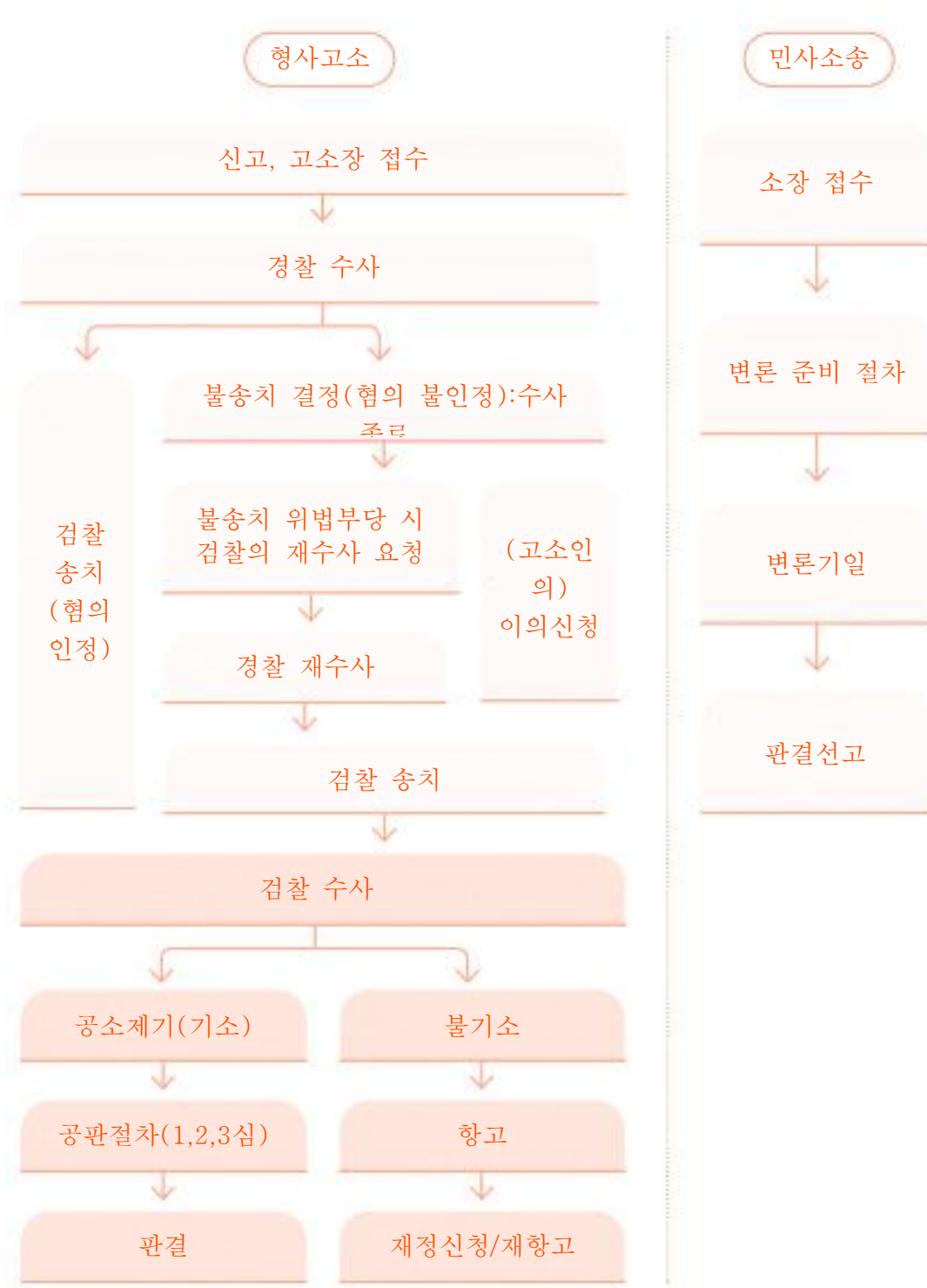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가 근무장소 변경 등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성희롱을 신고했거나 피해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괴롭힘 등 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권리침해,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소송절차

## 2 사법적 대응절차

+ 성희롱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 3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관리 및 징계 규정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2025.10.1.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22.>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2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 4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 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경고
-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이 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임명제청권자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별표1]<개정 2025. 12. 30.>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제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 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별표4와 같음							
가. 성 관련 비위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스토킹범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8.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11.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다른 공무원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별표4]<개정 2025. 12. 30.>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제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음란물 유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개정 2024. 6. 28.>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b>7. 품위유지의무 위반</b>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 도움주신 분들

총괄	권혁제	교육국장
책임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
주간	차동현	인성교육담당 장학관
기획	심정아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장학사
집필	전민경	부산남중학교 교감
	김진경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박경인	가야고등학교 교사
	김한나	동주여자고등학교 교사
	박다혜	용문중학교 교사
	이수환	명진중학교 교사
	장병순	기장초등학교 교사
검토	김창희	법률사무소 청송 Law 변호사
	황은미	이루리노무사 사무소 노무사

## 학교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

발행일 : 2026. 3.

발행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참고자료 :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

인쇄처 : 티지디자인 T. 051-244-2445

해당 파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포털](#) [공감]에 탑재